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제2장 보도게재청구

제3장 기사삭제청구

제4장 기타 참고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1-1.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나2047923 판결

외부 필자가 작성한 기고문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언론사는 허위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장관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IMF 사태 당시 재정경제부 고위직에 있었다. 같은 시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던 필자는 피고 언론사에 8회에 걸쳐 칼럼을 게재하였는데, IMF 사태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썼다. IMF로부터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기로 협의하였으나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때문에 합의가 파기되었고, 원고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칼럼에 포함된 내용 중 상기 쟁점들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이 정정보도를 명하였으나, 고위공직자의 공직 수행에 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 내의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① 언론중재법 제1조는 정정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라고 명시하면서, 당해 보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취재·작성한 주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언론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외부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독자에 대한 설득력이나 파급력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언론사의 보도 중에서 통상적인 방식의 일반 기사와 외부인사의 기고문에 의한 보도를 형식적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관하여 언론사의 면책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상충하는 권리와 법익의 균형 있는 조화 속에서 피해자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언론사는 편집권한 등을 통하여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외부인사의 기고문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이러한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칼럼을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자였던 사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 등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20나2047923 정정보도청구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합3972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D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위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하며, E와 F 등 피고 B 주식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해당 사이트에서도 위 정정보도문이

검색 및 노출되도록 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인터넷신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2019. 7. 19. 08:01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E와 F 등 피고 B 주식회사가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전송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날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Q 대통령 재임 시절 AI장관으로 근무하다가 H일자 K 겸 재정경제원 J에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I일자까지 K 겸 재정경제원 J으로 근무하였다.
-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 C는 AN경부터 M경까지 Q 대통령 비서실 N수석비서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의 칼럼 작성·게재

피고 C는 2018. 12. 26.부터 2019. 2. 21.까지 사단법인 R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8회에 걸쳐 작성·게재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2019. 1. 23. 게재한 별지3 기재 제5회 칼럼(이하 '이 사건 제5회 칼럼'이라고 한다)과 2019. 2. 21. 게재한 별지4 기재 제8회 칼럼(이하 '이 사건 제8회 칼럼'이라고 하고, 위 칼럼들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칼럼'이라고 한다)이다.

다. 피고들의 기사 게재

피고 회사는 2019. 7. 9. 피고 C와 인터뷰한 후 피고 C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고 피고 회사 소속 AJ 기자가 정리한 글을 2019. 7. 19. 인터넷신문 D 홈페이지에 G이라는 제목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이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정정보도청구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기사	기사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제1-1 부분	“IMF환란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A 거짓말로 촉발”	- 외환위기는 기업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외채의 증대와 외채관리 부실 등이 장기간 축적되고, O 등의 위기상황은 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거짓말(H일자 기자회견 발언)로 촉발된 것이 아니다.
제1-2 부분	내가 직접 보고 느꼈던 바로는 IMF 환란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IMF의 P 총재와 O의 비밀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Q의 지시를 받은 O는 W와 P를 만나 300억 달러 규모의 IMF 지원과 시장안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11월 18일 금융개혁법 국회 처리가 끝나는 대로 외환위기 극복 종합대책과 함께 H일자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고, P는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대로 지원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략) 그러던 와중 H일자 취임 기자회견에서 A이 “IMF에 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다. 비밀협상을 통해 성사됐던 IMF와의 합의가 파기됐고 미국, 일본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 1997. 11. 16. 정부와 IMF 사이에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없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날은 1997. 11. 21.로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 발언으로 인하여 정부와 IMF 사이의 합의가 파기된 것이 아니다. 원고가 H일자 기자회견 당시 “IMF에 가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제1-3 부분	Q는 TV화면으로 이를 지켜보다가 사투리로 “저놈아 왜 저러노!”라고 소리쳤다. Q는 ‘내 입으로 IMF에 가야 하니 제대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A은 ‘IMF에 가는 출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 원고는 H일자 기자회견 당시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H일자 IMF 구제금융 신청발표 계획에 대하여 전달받거나 전임자 등으로부터 인수인계 또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제5회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제5회 칼럼	칼럼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제2-1 부분	이날 오후 5시경 K의 대책발표가 예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A는 AD 실장으로부터 O가 준비해 놓은 대책에 대해 보고 받았고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모든 것은 준비된 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IMF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A는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힘주어 잘라 말했다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재무 관리는 증언한다.	- 원고는 H일자 기자회견 당시 "IMF에 가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제2-2 부분	그것은 O와 P와의 약속을 정부가 뒤집는 폭탄발언이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IMF 구제금융안 실종사건'이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IMF 구제금융 요청 부정, 혹은 거부사건'이다.	- 1997. 11. 16. 정부와 IMF 사이에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없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날은 1997. 11. 21.로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정부와 IMF 사이의 합의가 파기된 것이 아니다.
제2-3 부분	A의 IMF 자금요청거부 발언은 IMF로부터 외화 차입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었던 외환 금융시장의 생명줄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순간이었다. A는 외환위기의 대한민국이 IMF 긴급구제금융이라는 외줄을 타고 천 길 낭떠러지 위를 건너는 마지막 순간 그 외줄을 잘랐고 대한민국을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시켰다.	- 외환위기는 기업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외채의 증대와 외채관리 부실 등이 장기간 축적되고, O 등의 위기상황 은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 발언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다.
제2-4 부분	1998년 3월 V 정부가 출범하고 '환란 주범 찾기'가 시작되면서 A이 당시 IMF 행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도 거짓말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A은 전임자로 부터 "인계를 받지 못해 내용을 몰랐다"라고 거짓말로 변명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	- 원고가 H일자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에 대하여 전달받거나 전임자 등으로부터 인수인계 또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제8회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제8회 칼럼	칼럼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제3-1 부분	▶ H일자(131.9억 달러) Q 대통령의 인사로 발령받은 A의 IMF 구제금융 신청 거부와 11월 22일(127.9억 달러) 재신청으로 일어난 정책 혼란과 불신으로 인한 11월 18일(158.6억 달러) 이후 가용 외화 보유고의 격감으로 외환위기가 국가적 혼란으로 전환,	- 원고의 K 취임 이후 이들 만에 외환위기가 온 것이 아니다. 원고는 H일자 기자회견에서 IMF 구제금융 지원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하였을 뿐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날은 1997. 11. 21.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재신청'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제8회 칼럼	칼럼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H일자 Q 대통령의 A 임명과 IMF 자금지원 요청 거부 이후 국가적 환란으로, 전체적인 환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외환 위기가 환란으로 게임전환이 일어난 것은 H일자에 발생한 Q 대통령의 O를 A로 바꾸는 인사와 뒤이어 일어난 A의 IMF 발언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제3-2 부분	미국과 IMF가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에 IMF를 통해서만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는데도 IMF와 협상이 진행 중인 12월 27-28일 일본을 방문 대장성 장관을 만나 별도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A의 의문스러운 행동은 지금도 '역사적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 무렵 외화보유고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IMF와 미국 측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우리의 협상력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 우리가 IMF가 요구하는 가혹한 협상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환경을 만든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원고는 1997. 12. 27. ~ 28.이 아닌 1997. 11. 28. 일본을 방문하였고, IMF의 동의를 받고 Q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방문하였다.
제3-3 부분	Q 대통령의 악수가 된 인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A의 발언, 그리고 V 후보의 재협상론의 3대 사건은 환란기의 외환위기를 환란으로, 국가 부도 위기로까지 증폭시키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 원고는 H일자 기자회견에서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외환위기가 원고의 발언으로 증폭된 것이 아니다.

4) 위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칼럼을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 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 8678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기사의 제1-1 부분

이 사건 기사의 제1-1 부분은 이 사건 기사 첫 머리의 소제목 부분에 기재된 “IMF환란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A 거짓말로 촉발” 부분이다. 살피건대 ① 외환위기는 일반적으로 ‘대외 경상 수지 적자로 외환 보유고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 투기성 외화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어,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사건 기사의 제1-1 부분에 기재된 ‘환란’은 사전적·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어느 정도의 외환위기를 환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도 그 사용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그 표현 자체로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C는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에서의 IMF 관련 발언(거짓말로 표현)으로 인해 기존의 외환위기에서 환란(피고 C는 21. 8.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인도 하락 및 주가 급락, 환율 급등 등의 경제 상황의 악화로 국가 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로 내몰리게 되면서 협상력 약화로 인한 IMF와의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협상, IMF의 가혹한 차관 조건과 이면 요구 등 불편부당한 합의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 주권의 상실로 비롯된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기업의 줄도산, 국부의 해외 유출, 실업률의 급등과 자살률의 증가 등 국가·사회·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국가적 재앙 상태를 ‘환란’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으로의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C는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IMF환란이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촉발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제1-1 부분은 피고 C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제1-2, 제1-3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제1-2, 제1-3 부분은 “O는 P를 만나 300억 달러 규모의 IMF 지원 등을 약속받았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H일자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던 와중 H일자 취입 기자회견에서 A이 ‘IMF에 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다. 비밀협상을 통해 성사됐던 IMF와의 합의가 파기됐다”, “Q는 ‘내 입으로 IMF에 가야 하니 제대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A은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의 제1-2, 제1-3 부분을 통해 “O 정부는 IMF와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약속받고 H일자 이를 발표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H일자 기자회견에서 ‘IMF로 가지 않는다’고 발언함으로써 IMF와의 합의가 파기되었다, O 원고가 H일자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제1-2 적시사실’, ‘이 사건 제1-3 적시사실’이라고 한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 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2 적시사실에 대하여

가) 갑 제5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H일자 17:00경 이루어진 K 점 재정경제원 J 취입 기자회견에서 IMF 구제금융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 기자: 그 IMF에 구제금융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원고: (전략) 뭐 다시 말씀드리면, IMF의 지원이라는 거는 돈 플러스 정책 지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부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IMF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뭐 좀 검토하고 의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뭐 IMF에서도 충분히 통상적으로 IMF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뭐 비교적 IMF의 지원, 지지를,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IMF의 지원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원고: 금융지원 자체는 우리가 IMF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는 IMF 같은 기관이 소위 엔도스를 할 수 있는, 보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자: 현재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IMF의 긴급 금융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신인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고: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이하 생략)

위에서 본 원고의 IMF 구제금융 지원 관련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일자 17:00경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IMF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24호증, 제34호증, 제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2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O가 1997. 11. 14. Y AO수석비서관, W가 배석한 가운데 Q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IMF와 자금조달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하여 Q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후 1997. 11. 16. 방한한 P IMF총재와 IMF 자금조달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정부와 IMF 사이의 1997. 11. 16.자 면담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문건인 'P IMF총재 면담결과 보고'(을 제3호증)가 가장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문건에는 '차관협의단 파견 및 발표 시기를 한국 정부의 판단에 일임. 지원규모는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W는 약 300억불이 필요하다고 언급'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한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IMF가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 또는 약속하였다거나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H일자에

발표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이외에 정부와 IMF 사이에서 'IMF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체결된 구속력 있는 합의서나 양해각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O가 국회 국정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문건은 IMF와의 협의결과를 정리하여 내부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일 뿐이다.

- (2) 위 면담에 참석하였던 W는 감사원 조사에서 'P와 면담한 것은 IMF측이 자금지원 요청에 응해줄 수 있는지 운을 띄워보는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면담에 배석하였던 재정경제원 X는 검찰에서 '당시 O가 공식제의를 아님을 명백히 한 다음 나중에 공식제의를 하게 되면 IMF가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원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먼저 조사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3)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 면담일 이후인 1997. 11. 17.과 1997. 11. 18.에 IMF의 P,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관, 대변인 등은 '한국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4) O는 감사원에서 '금융개혁법안 통과와 함께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IMF의 지지성명이 있으면 대외신인도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IMF 금융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외환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5) 'P IMF총재 면담결과 보고'(을 제3호증)에 의하면, IMF는 1997. 11. 16. 면담에서 한국 대선 당선자의 차관협약조건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Z AA정당 대통령 후보자는 1997. 11. 20.까지도 IMF 구제금융 신청은 최후의 수단이니 가급적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는 1997. 11. 21. 저녁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야 밤에 기자회견을 열어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였다.

3) 이 사건 제1-3 적시사실에 대하여

갑 제15호증, 제29호증, 제34호증의 2, 3, 제3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제9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정부와 IMF 사이에 IMF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넘어 H일자 저녁 기자회견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1997. 11. 18. 정기국회가 폐회됨으로써 이미 1997. 8. 23.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금융감독기관의 분리 및 통합을 골자로 하여 13개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자 O는 위 법안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위 대책과 함께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O는 Y AO수석비서관과 함께 H일자 오전 ‘IMF 구제금융신청 계획을 H일자 저녁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Q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IMF 구제금융 신청 계획은 1997. 11. 18. 정기국회 폐회 이후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Q 대통령, O, Y, U 4명뿐이었는데, 위 4명은 원고에게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알려주거나 인수인계해주지 않았다. 특히 O는 후임 K인 원고에게 위 발표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와 형사 판결문에 의하면 O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원고에게 위 발표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였다¹⁹⁾. 또한 H일자 저녁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사실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준비되어 K 겸 재정경제원 J 임명 직후 원고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갑 제28호증의 1)’에도 IMF 구제금융 신청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재정경제원 AB 국장과 AC 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AB 국장과 AC 과장은 H 일자 원고에게 ‘P IMF총재 면담결과 보고’ 문건 등을 전달하여 보고하였을 뿐이고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알지 못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위 문건에는 ‘IMF가 금융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여 실태파악에 착수함. 차관협의단 파견 및 발표 시기를 한국 정부의 판단에 일임. 지원규모는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W는 약 300억불이 필요하다고 언급. IMF는 한국이 금주 중에 발표할 경제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입장 표명을 약속’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한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IMF가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H일자에 발표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다) AD 실장은 1999. 1. 26.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H일자 오후 5시에 IMF행 한다는 것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A(원고)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하다. IMF협상진행 사항은 P 면담결과 보고서로 보고를 드렸고 그날 IMF행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전달된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19) 다만, O는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발표방침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 Q 대통령이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H일자 원고에게 임명장을 준 다음 격려하는 자리에서 “IMF지원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O가 추진해온 사항을 잘 승계하여 ‘발표’하라”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은 Q 대통령이 그에 앞서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O로부터 ‘IMF 자금지원을 받는 문제를 포함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IMF 발표까지 포함하여 인수인계하라고 하였다’는 표현은 없다), 검찰수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 제출한 위 답변서를 담당변호사가 작성할 때 O와 Y이 담당변호사에게 찾아가고 초안을 전달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임명장 수여 후 격려 자리에 함께 있었던 T와 U은 당시 Q 대통령이 원고에게 ‘인수인계 받아서 잘 대처하라’는 포괄적인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IMF 지원금 받는 것을 발표하라’고 말하였다는 Q 대통령의 검찰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가 아니라 외부 필자가 작성한 기고문으로서 외부 필자의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외부 필자인 피고 C의 발언을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언론사가 외부인사로부터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기고문을 받아 편집 없이 그대로 또는 다소간의 편집만을 가하여 외부인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면서 보도하는 경우에 언론사의 책임에 대하여 본다.

① 언론중재법 제1조²⁰⁾는 정정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라고 명시하면서, 당해 보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취재·작성한 주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언론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외부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독자에 대한 설득력이나 파급력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언론사의 보도 중에서 통상적인 방식의 일반 기사와 외부인사의 기고문에 의한 보도를 형식적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관하여 언론사의 면책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상충하는 권리와 법익의 균형 있는 조화 속에서 피해자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언론사는 편집권한 등을 통하여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20)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외부인사의 기고문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이러한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는 단순히 피고 C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 C와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 피고 C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고 피고 회사 소속 AJ 기자가 정리한 글에 소재목을 붙이는 등 일부 편집을 한 다음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2, 제1-3 적시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그 적시사실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적시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되, 보도 위치, 방법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정하고, 아울러 피고 회사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청구는 민법에 기한 정정보도청구와 달리 행위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 및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기사의 제1-1 부분

앞의 제3의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제1-1 부분은 피고 C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제1-2, 제1-3 부분

앞의 제3의 가.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제1-2, 제1-3 부분은 이 사건 제1-2, 제1-3 적시사실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제3의 나. 2) 나)항 및 제3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2, 제1-3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5회 칼럼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5회 칼럼의 제2-1 부분

앞의 제3의 나. 2) 가)항에서 본 원고의 IMF 구제금융 지원 관련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일자 17:00경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IMF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 C가 이 사건 제5회 칼럼의 제2-1 부분에서 기재한 "‘IMF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A는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힘주어 잘라 말했다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재무관리는 증언한다" 부분이 다소간의 수사적 과장을 넘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5회 칼럼의 제2-2 부분

피고 C는 이 사건 제5회 칼럼의 제2-2 부분을 통해 "정부는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약속받고 H일자 이를 발표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H일자 기자회견에서 IMF와의 합의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제3의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제5회 칼럼의 제2-3 부분

앞의 제3의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5회 칼럼의 제 2-3 부분은 피고 C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5회 칼럼의 제2-4 부분

피고 C는 이 사건 제5회 칼럼의 제2-4 부분을 통해 "원고가 H일자 IMF 구제 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제3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제8회 칼럼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8회 칼럼의 제3-1 부분

(1) 피고 C가 각 일자별 외환보유고 등을 토대로 H일자부터 1997. 11. 22.까지 기간에 외환위기가 국가적 혼란으로 전환되었다고 한 부분은 피고 C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원고의 IMF 구제금융 신청 거부’ 부분은 앞의 제4의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IMF 구제금융 재신청’ 부분은 정부가 1997. 11. 16.부터 IMF와 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 발언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 신청’과 관련한 부정적인 입장이 표명되었다가 정부가 1997. 11. 21. 공식적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진행상황을 토대로 ‘재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8회 칼럼의 제3-1 부분 관련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8회 칼럼의 제3-2 부분

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의 일본 방문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8회 칼럼의 제3-3 부분

앞의 제3의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사의 제3-3 부분은 피고 C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C는 이 사건 제8회 칼럼의 제3-3 부분을 통해 ‘A의 발언’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4) 소결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이 사건 제1-2, 제1-3 적시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5회 칼럼을 통해 “정부는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약속받고 H일자 이를 발표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H일자 기자회견에서 IMF와의 합의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가 H일자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제5회 칼럼을 통해 ① Q 대통령이 원고를 K 겸 재정경제원 J에 임명한 것을 ‘만사가 아닌 망사가 된

인사'라고 하고, ②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 발표를 듣고 놀란 IMF AK, AL 미국 재무부 AP의 방문을 받았으며, ③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며 시중은 패닉 상태가 되었고, ④ 원고의 H일자 기자회견이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IMF와 미국, 일본의 불신을 자초하고,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잃게 하고, 외환위기를 환란으로 전환시키고 판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위 부분을 통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 위법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 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는 공직자였던 사람의 공직 수행 당시의 사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제5회 칼럼을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자였던 사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 등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제5회 칼럼은 1997년경 발생한 경제위기,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그 과정에 개입한 공직자들의 책임 소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쟁점에 관한 건전한 여론 형성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제5회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른바 ‘IMF환란’으로 표현되는 1997년 국가부도 위기 등에 대하여 당시 관여한 공직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에 대하여는 꾸준한 논쟁이 있었고 관여 공직자 중 일부는 회고록 등의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원고 역시 ‘AM’라는 책을 펴내 정부가 IMF 구제금융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본인의 입장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제5회 칼럼에 대하여 원고 역시 기고 활동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적인 기사 내용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제5회 칼럼을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 C는 AN경부터 M경까지 약 4년 2개월 간 대통령 비서실에서 N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비록 피고 C가 금융정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7년 당시에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외환위기와 관련된 상황 중 일부를 경험하였거나 관련자 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5회 칼럼을 작성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당시 관여한 공직자들의 회고록, 관련 서면 자료, 언론기사, O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문, 형사기록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로서는 본인의 지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료나 문헌 등을 참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나 피고 C가 작성한 이 사건 제5회 칼럼에 국회의 국정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의 자료와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 635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4의 나. 2)항에서 본 사정과 함께 피고 C가 참고하였다고 주장한 자료에는 이 사건 제1-2, 제1-3 적시사실 등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2, 제1-3 적시사실 등에 부합하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제1-2, 제1-3 적시사실 등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제5회 칼럼을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일부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단281859 판결

기사의 게재 및 편집에 관한 권한이 언론사에 있어도 기자가 단독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편집국의 수정 없이 게재되었다면 기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실관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고 은행의 대표자는 의원의 질의에 ‘원고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격 구성요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불완전판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관하여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D 회장의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편집국의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였다.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최초 보도 이후 정정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 은행의 대표자 다음의 큰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수정하였다.

이후 원고 은행은 원고의 대표자가 국회에서 ‘불완전판매를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최초 보도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원고 은행의 대표자가 마치 해당 상품 판매가 불완전판매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게 하였다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보도에 관한 결정권 및 그 책임은 언론사에 있으므로 기자인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피고가 단독으로 작성하였고, 편집국의 확인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수정된 것이 없는 만큼 피고에게도 그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순수한 보도기사가 아닌 취재기자의 논평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언론사는 그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보도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사는 피고가 단독으로 작성하였고 편집국의 확인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수정된 것이 없는 만큼, 피고에게도 그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볼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취재석]이라는 형태로 작성된 이 사건 기사는 취재기자의 순수한 보도기사의 성격보다는 논설위원이 아닌 취재기자가 작성하는 평론의 성격이 강하고, 큰따옴표가 보통의 경우 인용의 의미로 쓰이지만, 강조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최초 기사의 내용을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를 가지고 읽었을 때 D회장이

큰따옴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기사 내용에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D 회장의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기재한 것도 피고의 논평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가 위 기사에서 강조한 것은 피고가 불완전한 판매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가격 정보 부제공 사실을 D 회장이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를 전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논평 형식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사	건	2020가단281859 손해배상(언)
원	고	A은행
피	고	B
변	론	2021. 12. 8.
판	결	202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기자이다.
- 나. 원고의 대표자인 D 회장은 2020. 10. 16.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E 의원의 F 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저희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사후관리에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정보는 옵션의 평가값의 문제는 환 확률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또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예.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현대, 나중에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 보완조치를 완료하였구요. 다만 법원에서는 은행의 가격 구성요소를 밝힐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손실이전거래는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08년 7월에 회사에서 손실이전거래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거절, 체결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국정감사 질의, 응답을 취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는 C 편집국의 확인을 거친 후, 2020. 10. 18. 18:30:44경 제목이나 내용의 변경 없이 2020. 10. 18.자 C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최초 기사'라 한다).

G

[C B 기자]

[중략]

다수의 전문가들은 F가 사기였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F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결정적인 배경에는 A은행의 배상 거절이 있다.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배상을 거절하는 마당에 다른 시중은행이 배상할 리 만무했다. A은행의 사장인 D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F는 불안전판매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D 회장은 국감에서 기업들에게 F를 판매하며 “(F 옵션의) 가격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E H정당 의원은 “가격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은행업 감독세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도 불안전판매가 아니라는 D 회장의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 회장은 진실에 의해 코너에 밀렸고 그곳에서 무의식 중에 진실을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

[중략]

- 라. 원고 측 직원은 이 사건 최초 기사 게시 이후 피고에게 정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최초 기사의 제목 중 “I” 부분을 ‘I’로 큰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수정하였으며, 위 기사는 C 편집국의 확인을 거친 후, 2020. 10. 19. 17:56:27경 제목이나 내용의 변경 없이 C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수정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기사와 함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 마. 원고 측 직원은 2020. 10. 20.경 피고에게 “공문을 수신받을 수 있는 팩스번호 및 주소를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자신이 작성하여 2020. 10. 20. 18:10에 게재한 J는 제목의 C 기사를 링크한 인터넷주소를 보내면서, “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기사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최초 기사를 작성하기 전인 2020. 7. 6.에는 K이라는 제목의 C 기사를, 2020. 9. 9.에는 L라는 제목의 C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수정기사 이후에도 2020. 10. 26.에는 M라는 제목의 C 기사를, 2020. 12. 14.에는 N는 제목의 C 기사를, 2020. 12. 15.에는 O라는 제목의 C 기사를, 2020. 12. 16.에는 P이라는 제목의 C 기사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2. 17. 이후인 2020. 12. 30.에는 Q라는 제목의 C 기사를, 2020. 12. 31.에는 R이라는 제목의 C 기사를 2021. 1. 13.에는 S이라는 제목의 C 기사를, 2021. 1. 14.에는 T라는 제목의 C 기사를, 2021. 1. 24.에는 U라는 제목의 C 기사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보도에 관한 결정권 및 그 책임은 C에 있고, 피고에게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사는 그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 보도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가 단독으로 작성하였고, 편집국의 확인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수정된 것이 없는 만큼, 피고에게도 그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인 D 회장이 2020. 10. 16. 국회에서 “F에 관하여 불완전판매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없고, 오히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최초 기사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G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기사 내용에서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D 회장의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기재하여 마치 D 회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F 상품 판매가 불완전판매였음을 인정한 것처럼 오해받게 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피해 중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순수한 보도 기사가 아니라 기자의 논평이 포함된 기사이고, 이 사건 최초 기사도 원고의 대표자인 D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D 회장의 주장을 소개하되 피고의 평가를 기재한 것일 뿐이며, 그럼에도 원고 측의 이익을 받아들여 최초 기사 게재 하루 뒤에 큰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수정하였다. 또한 피고의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이고, 원고와 D 회장은 공인으로서 공적 비판을 수용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작성 행위에 관하여는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게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때는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 2) [취재석]이라는 형태로 작성된 이 사건 기사는 취재기자의 순수한 보도기사의 성격보다는 논설위원이 아닌 취재기자가 작성하는 평론의 성격이 강하다.
- 3) 큰따옴표가 보통의 경우 인용의 의미로 쓰이지만, 강조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최초 기사의 내용을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를 가지고 읽었을 때 D 회장이 큰따옴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4)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기사 게재 하루 뒤에 큰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수정한 이 사건 수정 기사를 게재하였다.
- 5)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알려주거나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비용이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또한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추구하리라는 점은 시장경제의 속성상 당연하여 누구든지 이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계약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가격구성요소의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고객에게 제로 코스트의 장외파생상품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option)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고객에게 당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비용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착오를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F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가격 정보 부제공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D 회장이 원고의 가격 정보 부제공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F 상품 판매를 불완전한 판매로 볼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하나,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주장되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

- 6) 한편 피고가 기사 내용에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D 회장의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기재한 것도 피고의 논평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가 위 기사에서 강조한 것은 피고가 불완전한 판매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가격 정보 부제공 사실을 D 회장이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이것을 들어 원고의 F 상품 판매를 불완전한 판매로 볼 수 없음은 앞서 5)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이를 전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논평 형식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대전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19가단124533 판결

원고들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를 ‘사채놀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약정이율이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군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부부관계이다. 원고들은 지인에게 총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을 초과하였다. 이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들은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채무자는 원고들에 대한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피고 언론사는 금전대여 관련 내용 및 군무원인 원고가 군 장비를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농토를 정비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피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피소된 유튜버는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채놀이를 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총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전대여 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군 장비를 반출하여 유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보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공무원의 비위를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원고가 군 장비를 반출했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유튜버인 피고에게는 군 장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데 대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채놀이를 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사실적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요지]

- 원고 D가 M에게 2억 원의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원고 E가 배우자인 원고 D의 부탁으로 M에게 2차례에 걸쳐 함께 2억 원을 입금시켜 준 것이고, 원고 D가 M과 약정한 이율은 대여 당시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한 것이어서 그 동영상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채놀이를 했다고 발언한 것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G(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중 원고 D가 군 장비인 포크레인을 무단 반출하여 성토 작업을

하였다는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해자(원고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피고 G의 이 부분 행위는 원고 D의 명예를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G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D가 입은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배상액은 발언의 내용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피해자의 특정 정도, 허위사실의 보도의 경위와 과실 정도, 동영상 업로드한 매체의 성격 등에 비추어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9가단124533 위자료
원	고	1. D 2. E
피	고	1. F 2. G 3. H
변	론	2022. 3. 30.
판	결	2022. 5. 18.
선	고	

주 문

1. 피고 G은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2.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 H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E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E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가 부담하며, 원고 D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 G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F은 각 15,000,000원, 피고 G, H는 공동하여 각 15,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원고 D은 I대학교 소속 군무원이고, 원고 E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직위·직급 지방행정주사)이다. 피고 F은 J언론 소속 기자, 피고 G은 인터넷 유튜브 방송인 K 채널 운영자, 피고 H는 위 K 채널 내 'L'라는 코너 진행자이다.

나. 원고 D과 M 사이의 금전 대여 및 소송 등 결과

- 1) 원고 D은 배우자인 원고 E의 계좌를 통해 M에게 2017. 2. 14. 2,000만 원, 2017. 3. 3.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기 2018. 3.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M의 부친인 N는 원고 D에 대하여 M의 위 대여금 채무 중 1억 원을 보증하고, 2017. 3. 6. 원고 D과 그 소유의 충남 부여군 O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4. 원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2) M가 2017. 4.부터 2017. 9.까지 6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D은 2018. 7. 23. M 및 N를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8차 전12796)을 신청하였고, M 및 N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018. 9. 4. 이의하여 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2676)으로 이행하였으나, N에 대하여는 2018. 11. 20. 소가 취하되었고, M에 대하여는 2018. 11. 21.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8.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원고 D은 2018. 12. 27. N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1069)를 제기하여 2019. 4. 30.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5. 18. 확정되었다.
- 4) 원고는 N 소유의 충남 부여군 O 임야 5,743㎡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9. 6. 13.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9. 7. 10. N와 N로부터 6,000만 원과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M의 제보에 따른 피고들의 기사 게재 및 동영상 업로드

- 1) 피고 F은 M의 제보를 받아 2019. 7. 8. J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P’이라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대전시청에도 등장했다. 그 내용은 소설과 다르지만, 그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어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유실에서 불법미용시설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던 대전시에 파문과 논란을 던질 전망이다.

A씨는 2017년 B씨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전제로 2억원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 30%의 이율을 책정해 이자만 연 6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 30%의 이자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고 이율을 연 24%로 제한하고 있지만, 6%를 더 받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B씨에게 빌린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A씨가 차용증을 썼고, 나머지 1억원은 그의 부모가 자신의 땅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선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B씨가 A씨 부모의 토지를 근저당으로 설정하지 않고, 채무로 설정하면서 최근 법원에서 이 땅을 B씨에게 지급 하라고 판결을 내리고야 한다. A씨와 그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A씨와 상의 없이 근저당이 아닌 채무 설정을 한 B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씨가 돈을 빌린 B씨와 그의 부인 C씨는 모두 공직에 있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B씨는 A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며 자신의 신분을 이유로 부인인 C씨의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모든 수익은 C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A씨는 C씨에게 매달 500만원씩의 이자를 계좌 이체했다. 한 사람은 군무원 또 한 사람은 대전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이 충격을 주는 대목이다.

특히 군무원인 B씨는 자신의 업무에 필수적인 군 장비를 무단 반출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 검직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의 기강 해이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휴대폰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협박성 문구를 보내 압박했던 것으로 확인돼 조선 말기 민초의 삶을 피폐하게 한 당시 관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땅과 돈 모두를 빼앗긴 A씨는 최근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고 B씨와 C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2) 피고 G은 2019. 7. 10. 위 K 채널 내 L라는 코너에 ‘Q’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위 동영상 내용 중 피고 G의 관련 발언은 아래와 같다.

- 동영상 1분 42초: “시청 6급 여직원...남편이 R 근무하는데...부부가 공동으로 사채 놀이를 했다.”
- 동영상 02:53부터 03:03까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원고 측을 가리킴) 농토에 와서 포클레인이 와서 땅 정비작업을 했다.”, “R에 있는 포클레인이 가서 정비 작업을 했다.”
- 동영상 05:45경부터 06:00경까지: “R 영내에 있는 포클레인을 가지고 나와서 작업했다. 성토 작업을 하는데 군 장비가 동원되었다.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

- 3) 원고들이 피고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2020. 1. 16. ① 피고 F에 대하여는, ㉠ 관련자를 A, B, C 등 비실명 처리한 점, ㉡ 제보를 받고 기사를 보도하게 된 경위와 제보된 내용 및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보도 경위가 공무원의 비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공익적 성격인 점, ㉣ 고소인의 항의를 받고 반론 보도를 한 점(을가 6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② 피고 H에 대하여는 방송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에 방송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방송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역할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③ 피고 G이 업로드한 동영상 중 원고 D이 원고 E의 계좌로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월 이자를 지급받은 행위를 가리켜 ‘사채놀이’라고 지적인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4) 피고 G이 업로드한 동영상 중 원고 D이 군 장비인 포크레인을 무단 반출하여 성토 작업을 하였다는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419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6. 16. 대전광역시 소속 6급 여성 공무원 중 배우자가 R 소속 근무원인 경우는 2명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원고 D)의 특징이 매우 용이하였고, 피해자는 R 영내의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토의 정비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 G은 피고 F이 2019. 7. 8. J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사에 ‘군무원인 B씨(원고 D)는 자신의 업무에 필수적인 군 장비를 무단 반출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라는 문구를 보고 임의적으로 위 기사 중 피해자가 반출한 군 장비가 포크레인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G의 위 발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 G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 G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대전지방법원 2020노2004)를 하였으나 2022. 2. 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1~6(가지번호 포함), 갑 7호증의 2, 4, 6~10, 12, 14, 15, 갑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G

1) 포크레인을 무단 반출하여 성토 작업을 하였다는 발언 부분

가) 피고 G이 업로드한 동영상 중 원고 D이 군 장비인 포크레인을 무단 반출하여 성토 작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G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피고 G의 이 부분 행위는 원고 D의 명예를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G은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D이 입은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배상액은 발언의 내용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피해자의 특정 정도, 허위사실의 보도의 경위와 과실 정도, 동영상을 업로드한 매체의 성격 등에 비추어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E 역시 피고 G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E가 행위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R에 근무하던 원고 D의 명예와 별도로 원고 D의 배우자인 원고 E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원고 E에 대해서까지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정이율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사채놀이'라고 지적인 발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M와 금전거래를 한 사람은 원고 D일 뿐임에도 마치 원고 E가 금전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방송을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D이 M에게 2억 원의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원고 E가 배우자인 원고 D의 부탁으로 M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입금시켜 준 것이고, 원고 D이 M와 약정한 이율은 대여 당시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한 것이었는바, 그렇다면 피고 G이 'Q'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동영상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채놀이를 했다고 발언한 것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G의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경위가 공무원의 비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 G의 이 부분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G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

1) 피고 F

가) 주장의 요지

① 원고 E가 M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원고 D의 부탁으로 M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입금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② 원고 D이 M와의 약정에 의하여 M의 부친인 N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며, ③ 임의로 군 장비를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인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F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피고 F이 게재한 기사 내용 중 금전대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D이 M에게 2억 원의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원고 E가 배우자인 원고 D의

부탁으로 M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입금시켜 준 것이고, 원고 D이 M와 약정한 이율은 대여 당시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한 것이었던 점, M의 부친인 N가 원고 D에 대하여 M의 대여금 채무 중 1억 원을 보증하고,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기사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로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2) 또한 기사 게재의 경위가 공무원의 비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금전대여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실할 사실에 해당하고, 나머지 군 장비 무단 반출 부분도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의하면 피고 F은 제보자인 M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 D이 군용 카메라를 외부로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여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도 이러한 피고 F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으로서의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F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H에 대하여

원고들은 K 채널 내 L라는 코너 진행자인 피고 H에 대하여도 피고 G와 공동하여 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H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피고 H에 대해서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G은 원고 D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D이 구하는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피고 G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D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F, H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E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242577 판결

취재 시 녹음이나 촬영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어도 원고 스스로 취재에 응하였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터뷰 대상이 원고임을 알 수 없게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아파트에서 소형견 3마리를 기르는 원고는 다른 주민들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다. 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수차례 넣었으나 시정되지 않는다면 <개소음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언론사에 제보하자,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는 제보자와 함께 원고를 찾아가 취재하며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촬영하였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원고는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원고가 당사자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보자는 취재 과정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녹음파일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피해를 주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타인의 피해를 농락하고 기만'하였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입주민 카페에 녹음파일을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보자를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제보자가 위 녹음파일을 근거로 원고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음을 입증하고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오히려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당시 취재기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보자의 동행여부, 녹음 및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취재 목적과 무관하게 제보자와 원고의 다툼까지 여과 없이 보도하였고, 녹음파일을 일방적으로 제보자에게 제공하여 무고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3,00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준의 보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과 피고가 제보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 스스로 피고의 이 사건 취재에 응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재에 대한 보도에서는 원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인터뷰 대상이 원고임을 알 수 없게 한 점을 비추어 피고가 사전에 녹음 및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취재 당시 원고는 E가 피고 등과 동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는 개소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갈등 사례와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으로 원고를 비판하기 위한 보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취재 당시

사전에 원고에게 E의 동행이나 녹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피고가 E에게는 위 녹음파일을 제공하면서도 원고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과 원고가 E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판결문

사	건	2021가단24257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2022. 5. 20.
판	결	2022. 6. 1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서 소형 개 3마리를 키우며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E은 그 바로 아래층인 F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기자로 재직하고 있었다.

- 나. E은 2018. 12. 26. G 뉴스 제보 게시판에 ‘원고가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이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민원을 수차례 넣었으나 시정되지 않아 제보하게 되었으며, <개소음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음날인 2018. 12. 27. 동료 기자와 함께 제보자 E을 찾아가 위와 같은 제보 내용에 관한 취재를 하다가, 원고에 대한 취재를 위해 동료기자, E,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 2명과 함께 원고의 위 거주지를 방문하였고, 취재를 하면서 당시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재’라 한다).
- 다. 같은 날 피고는 E이 이 사건 취재 당시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하자 E에게는 이를 제공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E은 같은 날 위 아파트 입주민의 다음카페에 ‘원고와 개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글을 올린다. 당일 G 8시 뉴스에서 취재해 갔다. 피해를 주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타인의 피해를 농락하고 기만한 D호를 공개 고발한다. D호는 개가 유난스럽게 짖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공익적 목적으로 게재한다. 방송은 아마 이번주 주말쯤 8시뉴스에 나올 예정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받은 녹음파일을 첨부하였다.
- 라. 이후 이 사건 취재와 관련하여 “H”이라는 주제로 G 뉴스가 방영되었고, 2018. 12. 29. G 인터넷 뉴스에 “I”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 마. 원고는 2019년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와 같이 뉴스를 방영한 G와 인터넷기사를 게재한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원고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위와 같은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11. ‘위 보도들에서 위층 주민으로만 지칭되었고, 원고의 음성 변조, 원고의 초상 및 집 내부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등에 비추어 인터뷰 대상이 원고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가 E의 위 2018. 12. 27.자 입주자 다음카페 게시글에 대하여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위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바. 한편, 원고는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1895호 사건에서 ‘E은 2018. 12. 27. 원고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원고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원고의 동의 없이 주거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무단으로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는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6342호 모욕사건에서 ‘2018. 12. 27. 원고의 집에서 G 방송국 기재 2명과 함께 층간소음 취재를 위해 방문하여 원고와 언쟁 중 원고에게 “개야”, “미친거 아니야, 진짜”, “어디서 큰소리를 내고 지랄이야”, “야, 이렇게 뻔뻔한 인간야”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을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12. 27. 원고 집을 방문할 당시 원고에게 E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이 사건 취재 당시 녹음 및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나아가 E과 안면이 있는 피고는 개소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 관련 취재 목적과 다르게 원고와 E과의 다툼까지 여과 없이 녹음, 촬영하였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층간 소음을 악의적으로 유발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인물로 묘사하여 방영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E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E이 위 입주자 다음카페에 원고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 녹음파일을 첨부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원고의 E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위 녹음파일을 주었더라면 원고가 무고혐의로 조사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취재 당시 원고에게 E의 동행이나 녹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 및 그것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취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원고 스스로 피고의 이 사건 취재에 응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재에 대한 보도에서는 원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인터뷰 대상이 원고임을 알 수 없게 한 점을 비추어 피고가 사전에 녹음 및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재 당시 원고는 E이 피고 등과 동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이 사건 취재의 보도 내용은 개소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갈등 사례와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으로 원고를 비판하기 위한 보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취재 당시 사전에 원고에게 E의 동행이나 녹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 다음으로, 피고가 E의 제보 이전부터 E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취재 당시 악의적으로 녹음, 촬영을 하거나 그 내용을 편집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에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취재 결과를 보도한 G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3) 끝으로, 피고가 이 사건 취재 당시의 녹음파일을 E이 악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거나, 당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원고의 E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에게는 위 녹음파일을 제공하면서도 원고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과 원고가 E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해명과 확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일부 제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면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비로 남편 소유의 건물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근무한 적 없는 교사나 다니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올려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기도 하였으나 항소심을 거쳐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어린이집을 인수한 사람에게 어린이집 원생수를 부풀렸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언론사를 상대로 추후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추후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된 피고의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으므로 가장 성격이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추후보도를 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보도내용 중 상당부분이 허위사실이고, 피고가 원고와 분쟁 관계에 있던 교사나 일부 제보자만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²¹⁾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보도내용에는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급하여 보도한 내용이 없으므로 추후보도의 전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의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고, 국가 보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장부는 경찰로 넘어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추후보도의 전제사실이 갖춰져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보도는, 원고와 분쟁이 있던 K이나 일부 제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많은 교사들의 진술이나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실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두 교사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해명과 “장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원고의 횡령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던 점, ④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도 전에 두 교사나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21) 2023년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보도의 공익성 및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확인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피고가 관련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였다거나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사실이 적시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21가합70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8. 12.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 가. 피고가 방송하는 R-TV <C>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아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추후보도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구성하고,
 - 나. D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면(인터넷주소 1 생략)의 추후보도대상영상과 피고의 뉴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의 추후보도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추후보도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2. 피고가 위 제1항의 기간 내에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22. 8. 1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2]와 같이 보도하라.
2.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 가. R-TV <C>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진행자의 멘트로 제1항의 추후보도문 제목 및 본문을 방송하라.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추후보도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구성한다. 또한 방송 이후 <C> 홈페이지 및 인터넷(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포털 사이트 E, F 및 G의 뉴스 및 TV 섹션에 한함) 또는 OTT 등에 공급되는 <C> 프로그램 동영상 및 스크립트에서 해당 추후보도 영상 및 추후보도문이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하라.
 - 나. 피고는 D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면(인터넷주소 1 생략)의 추후보도대상영상과 피고 뉴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추후보도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제1항의 추후보도문(제목 및 본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각 추후보도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되는 경우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3. 피고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21. 1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H에서 ‘I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 나. 피고는 2016. 4. 17. <D>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장부에 이상한 점(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고 남편의 개인빌라 건축비가 지급되거나 원고의 남편에게 돈이 지급된 점 등)이 있고, 근무한 적이 없는 교사나, 다니지 않는 아동의 이름이 올라가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그 결과 어린이집의 장부는 경찰로 넘어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3]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6. 4. 18. <J>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방송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하고, 이 사건 방송과 이 사건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라. 한편, 현재 <D>은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 13, 21, 39, 4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피고는 이 사건 방송 및 기사를 통해, “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고 남편 소유의 건물 공사비가 지출되고, 원고의 남편에게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②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이 명단에 등재되어 원고가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③ 실제로 다니지 않는 원생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기도 하였으며, ④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등의 없이 인출하였고, ⑤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우유를 납품한 업체, 교재를 납품한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나아가 위 의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장부는 경찰로 넘어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²²⁾, 횡령²³⁾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① 인천지방법원(1심)은 2019. 2. 15. 원고의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704 판결). ② 항소심은 위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원고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받은 수당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22)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고 남편에게 행사비용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에 대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우유를 납품한 업체, 교재를 납품한 업체 등에 실제 약정된 납품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다시 위 업체들로부터 그 차액 상당액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취지이다.

23) 횡령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국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연구활동비 명목의 수당을 본인이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다.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9노769 판결), 위 판결은 2021. 6. 3. 확정되었다.

- 3) 한편, 원고는 ‘허위로 어린이집 원생수를 부풀림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한 K을 기망하여 과도하게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와 관련하여서도 “허위원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K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74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추후보도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내용에는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급하여 보도한 내용이 없으므로 추후보도의 전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의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고, 국가 보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장부는 경찰로 넘어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추후보도의 전제사실이 갖춰져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추후보도의 내용은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기재 추후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되, 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 비율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한편, 현재 <D>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와 성격이 가장 유사한 <C> 프로그램을 통해 추후보도를 하도록 판결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갑 제3, 11, 13, 17, 18, 20, 21, 39, 40 내지 44, 54 내지 5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그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

가)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7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및 취지

- (1)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고 남편 소유의 건물 공사비가 지출되고, 원고의 남편에게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②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이 명단에 등재되어 원고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고, ③ 실제로 다니지 않는 원생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기도 하였으며, ④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동의 없이 인출하였고, ⑤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우유를 납품한 업체, 교재를 납품한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2) 이 사건 보도의 제목, 구성, 표현(“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 D은 이 어린이집에 회계장부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교사에게 국가 보조금이 나간 겁니다”, “이 통장에는 구청에서 매월 교사들에게 주는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이 입금됐는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장부를 검토해 본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이 총망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단순히 타인의 표현을 전달하거나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고의 남편을 위한 지출이 있었다는 부분

- (1) 이 부분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 10월 5일 어린이집 회계에서 5천만 원이 공사비란 명목으로 L 모씨에게 지급됐습니다. 10월 19일과 12월 4일에도 각각 3천만 원 넘게 역시 공사비로 L씨에게 나갔습니다”, “2015년 1월 26일 눈썰매장 행사비 150만 원, 5월 20일엔 봄 소풍 행사비로 200만 원이 전 원장의 남편인 M씨에게 지급됐습니다”라는 것이다.
- (2) 이 사건 보도의 제목, 표현, 구성,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서 원고의 남편에게 지급된 돈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경찰이 내수에 착수하였다는 보도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위 운영비를 횡령하여 원고의 남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 (3) 그러나 당시 어린이집 계좌와 원고의 개인계좌를 혼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9. 28.부터 2015. 5. 20.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된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한 총액이, 위 예금계좌에서 원고 남편에게 송금된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여 원고의 남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4) 한편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원고의 남편 또는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보도 내용은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5) 따라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이다.

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이 명단에 등재되어 원고가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부분

- (1) 이 부분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사 명단에 있는 두 명의 N모씨. 각각 7개월과 10개월씩 어린이집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지만 4, 5년씩 어린이집에서 일한 다른 교사들은 두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것이다.
- (2) 이 사건 보도의 제목, 표현, 구성,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두 명의 교사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원고가 교사 명단에 허위로 등재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3)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 언급되는 교사는 O, P으로 보이는데²⁴⁾, 갑 제7호증의

24) 원고는 소장 및 갑 제7호증에서 위 두교사를 O, P으로 특정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기재에 의하면, O, P은 관련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월급 및 수당까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두 교사는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는, 1심 판결에서는 일부 유죄를 받은 점과, 일부 교사가 “이름이 생소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정을 들며 위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위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

- (5)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보도 내용 역시 허위이다.

마) 실제로 다니지 않는 원생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었다는 부분

- (1) 이 사건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지난해 둘째 아이를 첫째 아이가 다니던 원고의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미 여기에 다니는 걸로 돼 있던 겁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원고로부터 아이를 허위로 올려달라는 노골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는 내용이다.

- (2) 이 사건 보도의 제목, 표현, 구성,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다니지도 않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3)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위 아동 등록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 (4)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제보자의 제보내용이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제보 자체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의 말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단순히 ‘제보 자체는 사실’임을 소명할 것이 아니라, 그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한 부담을 진다.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5)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결과 허위 원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원생 의혹을 수궁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 (6) 이 부분 보도 역시 허위라고 판단된다.

바) 원고가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등 수당을 횡령하였다는 부분

- (1) 이 사건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통장에는 구청에서 매월 교사들에게 주는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이 입금됐는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받았어야 할 돈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는 내용이다.
- (2) 사건 보도의 제목, 표현, 구성,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교사들의 동의 없이 수당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착복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3) 그러나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교사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수당 등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하여 다른 어린이집에서 통상 받는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보도 역시 허위라고 판단된다.
- (4) 피고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사)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아래 각 부분들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교재, 우유를 납품한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가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와 필요 경비로 지급받은 돈은 원고의 소유가 되므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 외에 이 사건 보도 중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재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교재대금을 부풀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교재대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2) 원고는 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3억 3천여만 원을 어린이집 회계에 채워넣었다는 부분

원고도 3억 3천만 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원고가 “횡령은 아니며, 허위 아동과 허위 교사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는 부분

이 부분 보도내용은 원고의 반론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 (4) Q의 인터뷰 내용

원고는, Q 회장의 인터뷰 내용 중 “쌈짓돈처럼 운영한 것은 ‘내가 이만큼의 부분에서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돌려놓을게’ 이걸 잘못된 거죠. 왜? 안 걸리면 자기 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용은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명예 침해 등 손해

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제보자와 관련자, 전문가를 폭넓게 인터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보도한 것이므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보도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회계처리의 적법성 여부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도는, 원고와 분쟁이 있던 K이나 일부 제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많은 교사들의 진술이나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실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두 교사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해명과 “장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원고의 횡령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던 점, ④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도 전에 두 교사나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확인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피고가 관련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였다거나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사실이 적시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직업,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하게 된 경위, 목적, 형식, 내용, 표현 방법,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추후보도청구 및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는 2016. 4. 17. 이루어진 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21. 6. 11. 이루어졌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 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이 2016. 4. 17.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21. 9. 2. 제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라.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점, 특히 의혹을 받는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방송 및 기사가 지속적으로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마.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보도에 사용하였더라도 정당한 목적으로 출처를 명시하여 영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공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F종교단체 관련 예배, 행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공표하는 업체로, 피고 언론사는 F종교단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원고 업체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해당 종교단체의 예배, 행사 영상의 일부를 무단사용하였다.

원고 업체는 원고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을 피고가 허가 없이 사용하여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 중 원고가 제작한 영상 부분에 대한 삭제 및 6,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의 목적, 영상을 사용한 분량(전체 보도분량 약 33분 중 원고 영상물사용분량은 3분 미만)이 적어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보도 영상이 원고의 영상을 대체할 수 없으며 출처가 원고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이 사건 프로그램과 원고 영상의 목적, 시청대상, 이용 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영상의 일부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영상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 영상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영상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① 비록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한 유료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영상 중 일부를 복제한 것(피고 영상)은 이 사건 종교단체와 G에 대한 보도 및 비평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중송신하는 행위 또한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총 33분 정도의 분량인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 영상 일부를 복제한 피고 영상이 포함된 부분은 3분 미만으로, 이러한 피고 영상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 영상은 예배 또는 행사 방송인 원고 영상과는 목적이나 이용 방식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 영상 중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중송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영상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이고,

결국 원고 영상에 대한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포함된 피고 영상의 출처가 원고 영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영상의 일부를 복제한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공중에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공중송신권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21가합105303 손해배상(저)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2022. 9. 22.
판	결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2019. 3. 27.자 D “E” 방송 영상 중 별지 목록 기재 시간에 방송된 각 영상을 삭제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다시보기 서비스 형태로 위 방송 영상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약 피고가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2항 기재 방송 영상을 전송할 때마다 원고에게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종교단체인 F(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 한다)의 총재 G와 관련한 예배 또는 행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에 공표하고 있다.
- 나.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3. 27.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가 H에 공표한 영상 중 일부를 이용하여 제작한 피고의 『D』프로그램 25회(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방영하였다.
- 다.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H 공표 영상을 이용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아래 표의 '원고의 H 공표 영상'란 기재 각 영상을 통틀어 '원고 영상'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프로그램은 ① 도입 부분, ② 첫 번째 이야기, ③ 두 번째 이야기 'I'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3은 위 ①부분에서 이용한 것이고, 아래 표의 순번 4 내지 16은 위 ③부분에서 이용한 것이다(이하 위 ①부분과 ③부분을 통틀어 '피고 영상'이라 한다).

원고의 H 공표 영상 이 사건 프로그램

순번		원고 영상이 이용된 위치	이용된 원고 영상의 분량
1	2018. 10. 7. 주일예배	16초 ~ 17초	1초
2	2018. 10. 7. 주일예배	17초 ~ 18초	1초
3	2018. 10. 7. 주일예배	29초 ~ 30초	1초
4	2018. 10. 7. 주일예배	25분 42초 ~ 25분 47초	5초
5	2018. 10. 7. 주일예배	25분 48초 ~ 26분 2초	14초
6	2018. 10. 7. 주일예배	26분 3초 ~ 26분 5초	2초
7	2018. 10. 7. 주일예배	26분 6초 ~ 26분 10초	4초
8	2019. 1. 30. 수요일예배	26분 11초 ~ 26분 28초	17초
9	2018. 9. 30. 주일예배	26분 29초 ~ 26분 45초	16초
10	2019. 1. 6. 주일예배	31분 21초 ~ 31분 38초	17초
11	2019. 1. 6. 주일예배	42분 4초 ~ 42분 36초	32초
12	2019. 3. 10. 스포츠행사	42분 37초 ~ 42분 48초	11초
13	2018. 11. 28. 수요일예배	42분 49초 ~ 43분 11초	22초
14	2018. 10. 31. 수요일예배	43분 12초 ~ 43분 16초	4초

순번		원고 영상이 이용된 위치	이용된 원고 영상의 분량
15	2019. 1. 30. 수요일예배	43분 17초 ~ 43분 23초	6초
16	2019. 1. 6. 주일예배	50분 22초 ~ 50분 29초	7초
		합 계	2분 40초 ²⁵⁾

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이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게시하여²⁶⁾ 공중에게 유료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내지 2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영상은 원고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로 원고가 그 저작권자를 가진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피고 영상을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자인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이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공중을 상대로 유료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자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의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침해물건의 폐기를 구하는 한편,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95,000,000원 (=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 200,000,000원²⁷⁾ +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손해 495,000,000원²⁸⁾) 중 일부인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위 저작권 침해정지의무 및 침해물건 폐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영상을 전송할 때마다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5) 피고는 원고 영상을 인용한 분량이 약 2분 55초라고 자인한다.

26) (인터넷주소 2 생략)

27) 200,000,000원(= 40,000,000원(원고의 A 서비스 이용약관 중 공중파 방송 서비스 이용료 10,000,000원 + 위 이용약관 중 VOD 서비스 이용료 30,000,000원) × 무단사용에 부과하는 이용료 5배, 갑 8호증 10쪽)

28) 495,000,000(= 다시보기 비용 1,650원 × 이 사건 프로그램이 게재된 유튜브 조회수 300,000회)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영상은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다.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영상의 일부를 복제하여 피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러한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저작권법 제35조의5²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 영상이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1, 8, 31호증의 각 기재, 갑 9 내지 2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영상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② 원고가 H에 공표한 원고 영상은 모두 G의 예배 또는 행사영상으로 G 내지 이 사건 종교단체와 관련한 종교적 목적에 기초하여 제작한 영상인 점, ③ 원고 영상에는 자막의 형태로 영상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원고의 직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소유권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영상은 원고가 G 내지 이 사건 종교단체와 관련한 종교적 목적에 기초하여 영상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원고의 직원에게 명하여 만든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9)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35조의3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조문 위치가 제35조의5로 이동되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당시에는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었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로 기재한다.

나. 복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9 내지 24호증의 각 영상,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면서 원고 영상의 일부를 복제하여 피고 영상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G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총재로 활동하던 중 이 사건 종교단체의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2009. 2. 10.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노2199,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G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2018년 2월경부터 다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총재로 활동하였다.
-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가 된 남매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한편, G의 과거 이 사건 종교단체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력,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출소 이후 활동,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이 사건 종교단체 관계자의 입장 등을 방송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종교단체와 G에 대한 보도 및 비평의 목적으로 G이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그 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원고 영상의 일부를 인용, 즉 복제하여 피고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인용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
-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분량이 약 33분인 데 비하여 피고가 인용한 원고 영상 일부(피고 영상)의 분량은 위 표의 ‘합계’란 2분 40초 내지 피고가 자인하는 약 2분

55초로 상당히 짧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종교단체와 G의 활동을 보도 및 비평하기 위해 그 활동이 녹화된 원고 영상을 일부 복제하여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주된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인용된 원고 영상은 부종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는 원고 영상의 일부를 복제한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원고 영상에 표시되어 있는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주)A³⁰⁾에게 있으므로 무단 도용, 유포, 편집, 삭제,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및 “H”³¹⁾의 로고를 그대로 인용하는 한편, 피고 영상 중 위 표의 순번 4 내지 16의 각 영상에는 별도의 자막으로 “출처: (주)A”을 삽입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인용 방법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서 원고 영상이 인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영상은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일반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취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 방법에 해당한다.
- 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종교단체와 G에 대한 보도 및 비평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원고 영상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 영상 자체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와 G에 대한 보도 및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원고 영상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G의 예배 또는 행사 영상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제공³²⁾하고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과 원고 영상의 목적, 시청대상, 이용 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영상의 일부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영상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영상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영상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0) 원고이다.

31) 원고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32) 원고는 원고 영상은 종교 목적으로 승낙을 받은 자에 한하여 유료로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2. 5. 16.자 준비서면 9쪽).

다.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피고가 원고 영상의 일부를 복제한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유료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9 내지 24호증의 각 영상,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한 유료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영상 중 일부를 복제한 것(피고 영상)은 이 사건 종교단체와 G에 대한 보도 및 비평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중 송신하는 행위 또한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총 33분 정도의 분량인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 영상 일부를 복제한 피고 영상이 포함된 부분은 3분 미만으로, 이러한 피고 영상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 영상은 예배 또는 행사 방송인 원고 영상과는 목적이거나 이용 방식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 영상 중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중송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영상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이고, 결국 원고 영상에 대한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포함된 피고 영상의 출처가 원고 영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영상의 일부를 복제한 피고 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공중에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공중송신권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영상에 관한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영상을 인용한 것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51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영상을 아무 제한 없이 상업적으로 계속하여 이용할 수는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서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면 소극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저작하는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저작권법 제51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하였음에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51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 영상을 해킹의 방법 또는 원고가 H에 가입을 승낙한 회원을 속이거나 위 회원과 공모하여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갑 8호증)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입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영상 인용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 영상을 입수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인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인 J에 대하여 J이 H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여 원고의 저작물인 'G 설교 영상'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2019. 6. 25.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서울 서부지방법검찰청 2019년형 제22202호).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208584 판결

‘사실상 자사 제품’, ‘사기를 쳤다’, ‘수천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보도이고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연예인이자 쇼핑몰 대표로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10여 개의 다이어트 제품을 비교 체험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겠다고 타사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찬받은 특정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협찬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해 피고 언론사는 ‘사실상 자사 제품’, ‘사기를 쳤다’, ‘수천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보도이고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가 제1, 2영상에서 비교체험한 결과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처럼 소개한 ‘N’은 해당 제품을 협찬받은 것이고, 원고와 ‘N’을 판매하는 M이 사업상 거래 및 업무적 협력관계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면서 손톱이 부러지는 장면을 보여 준다든지, 물에 녹여서 섭취해야 하는 발포형 제품을 입안에 넣은 뒤 헛구역질을 하는 등 부당한 비교광고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제2영상에서 체중감소와 다이어트 보조제 ‘N’ 섭취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가 다이어트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다. 원고는 제1보도 이후 공정성 훼손과 특정 제품의 안 좋은 점을 자극적으로 부각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까지 하였다.
- 이 사건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고가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공동구매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자사 제품’, ‘사기를 쳤다’, ‘수천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고, 또한 그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B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21가단20858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2022. 10. 7.
판	결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이 법원 2021머49233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1. 10. 28.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3년부터 'D'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E'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가이고, 피고 B는 'F'라는 제호의 인터넷 신문

(이하 'F'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소속 기자이다.

- 2) 피고 B는 2020. 8. 19. “H”, 2020. 8. 20. “I”, 2020. 8. 21. “J”이라는 제목의 보도(이하, 차례대로 제1, 2, 3보도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F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홍보한 제품은 원고의 자사 제품이 아니고, 원고는 당해 제품을 협찬을 받아 홍보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마치 ‘원고가 자사제품(또는 협찬 받은 것)인데도 이를 속이고 당해 제품을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제3보도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여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을가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원고는 방송연예인이자 쇼핑물대표로 SNS는 물론 유튜브 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명인이고, 피고 B는 기자이다.
- ②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튜브 채널에, 2020. 6. 1. 'K'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제1영상'이라 한다)과 2020. 6. 13. 'L'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제2영상'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제1영상은 M의 'N'를 포함한 10여개의 다이어트 제품을 비교체험 중이고, 추가로 2개 제품을 구매하여 테스트를 하였으며, 이 중 정말 살이 빠지고 마음에 들면 공동구매를 진행할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취지의 영상이고, 제2영상은 아침에 일어나 'N'를 복용하고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와 엄청난 음식을 먹으면서 3kg을 뺐고, 다이어트 보조제 'N'를 같이 먹어서 효과가 좋아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이다.
- ③ 원고가 제1, 2영상에서 비교체험한 결과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처럼 소개한 'N'는 사실은 해당 제품을 협찬받은 것이고, 원고와 'N'를 판매하는 M가 사업상 거래 및 업무적 협력관계에 있었음에도(원고의 'E'를 판매하는 O의 대표 P가 'N'의 상표출원인이자 등록권리자인 점 등) 원고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 ④ 한편, 원고는 제1영상에서 동종의 다이어트 보조제에 해당하는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면서 손톱이 부러지는 장면을 보여 준다던지, 물에 녹여서 섭취해야 하는 발포형 제품을 입안에 넣은 뒤 헹구역질을 하는 등 부당한 비교광고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제2영상에서 체중감소와 다이어트 보조제 'N' 섭취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가 다이어트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다.

- ⑤ 제품섭취 전후 비교 체험기 등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 사건 보도는 제1, 2영상에 대하여 쓴 기사이고, 원고는 제1보도 이후 공정성 훼손과 특정 제품의 안 좋은 점을 자극적으로 부각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은 불기소결정이 확정되었다.
- ⑥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고가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공동구매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자사제품', '사기를 쳤다', '수천만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고, 또한 그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B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⑦ 한편, 제3보도의 "J"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내용은 제1, 2보도와 같은 내용으로 제목만을 따로 떼어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종료선언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 가. 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상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21머49233 사건에서 상임조정위원회는 2021. 10. 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21. 10. 14.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1. 10. 6. 피고 B의 소송대리인에게, 2021. 10. 7. 피고 C의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되었으며,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은 2021. 10.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C 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제기 기한인 2021. 10. 28.을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서 분리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결정 내용이 분리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 C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소송종료 선언을 한다.

제2장

보도게재청구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102103 판결

특정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더라도 그 발언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증거에 의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국회의원인 원고가 국회에서 농성 중인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들을 ‘때밀이들’이라고 지칭하였고, 피고 언론사의 기자가 해당 의원에게 연락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국회에서 유족들이 농성 중인 사실을 몰랐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유족들이 아닌, 타 정당 관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에게 연락하여 사실확인을 한 것은 피고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 타사 기자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때밀이들’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더라도 그 발언이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보도문의 내용 중 유족들의 농성 사실을 몰랐거나 해당 발언이 타 정당 관계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한 것이 피고 언론사 기자가 아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의 문언 자체에 관하여는 일견 다툼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발언이 지목한다고 주장하는 대상은 전혀 다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발언의 동기, 목적, 의미가 달라지며 이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당시 2층에서 유족들이 농성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회 본청의 구조, 유족들의 농성 진행 경과, E정당 의원들의 대응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2층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발언 중 ‘때밀이들’이라는 표현은 보수층에서는 연녹색의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I정당 및 K정당 관계자들을 속칭 ‘때밀이’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어, 당시 H 의원에게 I정당 의원과 싸우지 말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 당시 E정당 의원들과 I정당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거나 I정당 및 K정당 관계자들이 연녹색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현장에 연녹색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이는 당시 2층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 원고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반론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결문

사	건	2021가합102103 반론보도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C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메인화면 D 첫 부분 및 정치면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이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이 사건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활자체로 게재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E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인터넷뉴스 신문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C’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 나. 피고는 2020. 12. 11. C 홈페이지에 『F』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기사는 ① 원고가 고 G의 유족들(이하 ‘유족들’이라 한다)을 ‘때밀이’라고 지칭하였고, ② 피고 소속 기자가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원고에게 연락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국회 2층에서 유족들이 농성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원고의 위 발언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전 피고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별지 1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피고

- 1)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한 사실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적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에 대하여 피고가 표명한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 2)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말미에서 원고의 반박 내용을 게재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 중 유족들이나 원고의 동선, 국회 본청의 출입현황, 이 사건 기사 보도 전 원고와의 통화 여부 등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 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유족들이 2020. 12. 9. 국회 본청 2층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라 한다)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한 사실, 같은 시각 원고를 포함한 E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3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었던 사실, E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회 도중 H 의원이 “아 시끄러워. 뭐하는 거야”라고 하자 원고가 “누구야? 왜 때밀이들하고 싸워”(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와 H 의원이 유족들이 구호를 외치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후 기사 본문은 E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법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 중이었고, 같은 공간에서 유족들이 9일째 농성 중이었던 상황, 유족들이 E정당 의원들 쪽을 바라보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자 E정당 의원들은 ‘I정당에 호소하라’는 취지로 대응하였던 사실, 이를 지켜보던 H 의원이 유족들 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당시 상황과 발언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어 유족들은 당시 연녹색의 단체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이는 흔히 이태리타월이라고 불리는 세신용 손타월 색상과 비슷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와 한 첫 번째 통화에서 원고는 이를 부인했지만, 해당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당황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였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구조와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이라거나 ‘G 노동자 사망 2주기 하루 전 날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표현하는 등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의견표명은 ① 원고가 국회 본청 2층에서 농성 중이던 유족들을 ‘때밀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 기자가 이 사건 기사 보도 전에 이 사건 발언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사실’이라 한다)의 존재를 각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의 ‘때밀이들’이 유족들이 아닌 I정당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의 문언 자체에 관하여는 일견 다툼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발언이 지목한다고 주장하는 대상은 전혀 다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발언의 동기, 목적,

의미가 달라지며 이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 1)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 28803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한 제②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에서 원고가 적시한 제①사실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대부분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상 허위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 가) 사건 당시 유족들은 국회 본청 2층(본회의장 입구 계단 아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었다(원고는 G의 유족인 J G재단 대표가 2020. 12. 4.부터 7.까지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린 행사 등에 참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유족들이 9일째 농성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는 국회 본청 3층(본회의장 입구 계단 위)에서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I정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해 E정당 의원들과 함께 도열해 있었다.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 2층과 3층은 분리된 공간이 아닌, 돔 지붕 아래 계단으로 이어진 하나의 공간이다. 2층과 3층에는 각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3층 출입문 입구에서는 2층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면 계단을 통해 2층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시 유족들은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눈에 띄기 쉬운 연녹색의 상의를 단체로 착용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었다.

- 나) 유족들은 2층에서 3층에 있는 E정당 의원들 쪽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안 죽게 해주십시오”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E정당 의원들은 “I정당에게 가서 하세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I정당 찾아가요”라고 대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부근에 있던 H 의원은 “아 시끄러워, 뭐하는거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발언은 유족들의 E정당 의원들에 대한 호소, 이에 대한 E 정당 의원들의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다) 원고는 당시 2층에서 유족들이 농성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국회 본청의 구조, 유족들의 농성 진행 경과, E정당 의원들의 대응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2층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회 출입인원을 관리하고 있었고, 원고가 3층 출입문을 이용해 국회에 출입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발언 중 ‘때밀이들’이라는 표현은 보수층에서는 연녹색의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I정당 및 K정당 관계자들을 속칭 ‘때밀이’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어, 당시 H 의원에게 I정당 의원과 싸우지 말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 당시 E정당 의원들과 I정당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거나 I정당 및 K정당 관계자들이 연녹색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현장에 연녹색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이는 당시 2층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 마) 이 사건 기사 보도 전, 원고와 통화한 기자는 피고 소속이 아닌 ‘L언론’ M 기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제②사실 적시 부분은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원고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도한다는 부분이 핵심이므로, 원고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반론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404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2000153 판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동안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기한 내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부적법하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 회사가 검색어 결과를 왜곡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매크로 업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 보도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상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이후 원고는 주위적으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취지에 원고의 청구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임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을 때는 이미 원고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법정기한 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를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내용이 원고가 인위적으로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 언론사의 논평에 해당하며, 공익적 목적의 보도로서 근거사실 또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언론보도로 침해된 피해자의 명예 또는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아울러 언론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본 청구기간의 예외로서 소 제기 간주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결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제기 기간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소 제기 간주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권리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해당 언론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8가합40419 정정보도 등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C」프로그램 처음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원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내용은 원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전체화면에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C」프로그램 처음에,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원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내용은 원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전체화면에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C」가 방송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 A(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를 비롯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이다.
- 나. 피고는 2018. 6. 3. 23:45경 「C」프로그램에서 “D”라는 제목 아래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다. 원고는 2018. 6. 7. 원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하여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의 공개 검증을 제안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방송에서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검증 방법에 관한 원·피고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라. 원고는 2018. 9. 3.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정절차는 2018. 10. 24. 조정불성립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시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① E과 관련된 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A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급상승 검색어’라 한다) 결과를 조작하고(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A에서 제공하는 E에 관한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였으며(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③ A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 등 검색 결과를 왜곡하는 매크로 업체를 방치하고 있다(이하 ‘③ 부분’이라 한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 및 간접강제를, 예비적으로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간접강제를 구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E과 관련된 급상승 검색어 결과 또는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원고가 검색 결과를 왜곡하는 매크로 업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③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3. 판 단

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³³⁾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764조 내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33)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인지 아니면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는 공식 블로그에 입장을 표명한 2018. 6. 7.에는 이 사건 보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은 조정불성립 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① 부분에 관하여

가) 갑 제1, 2, 6, 19호증,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A가 인위적으로 E 관련 검색어를 급상승 검색어에서 삭제하는 등 급상승 검색어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피고는 E 관련 검색어의 급상승 검색어 체류시간이 짧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실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는 주제를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E 관련 검색어가 쉽게 순위에서 사라지는 현상의 원인을 원고의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원고가 설명하는 급상승 검색어를 추출하는 로직과 알고리즘에 따르면 기존에 검색량이 많은 'E'와 같은 특정 검색어의 경우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거나 그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진행자 및 출연자의 'A에 대한 의혹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결과적으로 E의 불법과 비리를 A에서 가려주고 숨겨주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발언은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급상승 검색어에 있어 원고가 기술적으로 검색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의 논평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화면에 "C A 실검 조작?"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의 제목 화면을 캡처하여 표시함으로써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조작한 주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E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C' 방송 이후 인터넷에 급상승 검색어의 추이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A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한 F 교수 발언은 “사람들이 'G'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 조작한다 안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확실한 검색량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A가) 조작했다, 갑자기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지 않으려면 그 서비스(A)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확실히 공개를 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사람들의 원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상승 검색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지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다.

나) 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유독 E 관련 검색어인 H만 급상승 검색어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가 급상승 검색어에 체류한 시간은 12분이고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던 다른 검색어와 비교할 때 매우 짧은 편에 속하는 점, ② 피고는 E 관련된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되게 'E 관련 방송에만 '순삭(순식간에 삭제)', '광탈(광속탈락)' 현상이 일어나는지', '유독 검색어 'H'만 왜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것일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표현이 오로지 E 관련된 검색어에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검색어의 경우 순삭이나 광탈과 같은 현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② 부분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E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 'T' 프로그램 리뷰 기사 공감 수가 0 아니면 마이너스1이라서 조작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의혹을 제기하는 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단순히 주장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점, ② 공감 수가 0 아니면 마이너스1로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A에게

문의한 결과 댓글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원고의 해명에 대하여 방송의 출연자들은 “하필 왜 ‘I’에서 E를 다룰 때에만”이라는 논평을 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E에 관한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③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은 피고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A에서 서비스하는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업체(이하 ‘매크로 조작 업체’라 한다)의 대표들이 처벌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피고가 취재한 구체적인 매크로 조작 업체들의 실제 검색어 조작 사례, 조작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이러한 검색어 조작이 여론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을 74%를 차지하는 원고가 매크로 조작 업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책이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논평 내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제공하는 급상승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 기사 댓글 서비스에 있어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아가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① 이 사건 보도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자라면 경험할 수 있는 급상승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피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피고는 원고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가 수집한 한정적인 자료를 기초로 급상승 검색어 결과 추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
- ③ 피고는 피고가 검증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6) 소결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2609, 2004다42616(반소)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와는 달리 이 사건 보도가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도 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와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됨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0나2000153 정정보도 등
원 고 ,	항 소 인	A 주식회사
피 고 ,	피 항 소 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4041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간접강제청구 포함)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C」프로그램 처음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원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내용은 원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전체화면에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C」프로그램 처음에,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원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내용은 원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전체화면에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C」가 방송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정정보도(예비적으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이하 '정정보도 등 청구'라 한다)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청구인지 아니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서 위 청구권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³⁴⁾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② 특히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민법상 불법행위에서도 보도 내용 내지 적시사실의 허위성이 공통으로 요구되는바, 원고는 소장, 2019. 3. 8.자, 2019. 6. 17.자, 2019. 8. 12.자 각 준비서면 및 2019. 11. 12.자 참고서면에서 언론사인 피고가 보도한 내용의 허위성을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점, ③ 또한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특별규정으로서 피해자는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소장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제1심에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등 청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로 보아 피고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34) 언론중재법도 제26조 제1항에서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이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³⁵⁾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마지막 행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D’라고 한다)”로, 3면 3, 4행의 “E”를 “E”로, 3면 10, 11행의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을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의 조정신청”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는 “원고가 ① F과 관련된 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D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급상승 검색어’라 한다) 결과를 조작하고(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 한다), ② D에서 제공하는 F에 관한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 한다), ③ D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 등 검색 결과를 왜곡하는 매크로 업체를

35)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불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리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법리 등에 따라 이하에서는 원고가 정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방치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3주장'이라 한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예비적으로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간접강제를 구함과 아울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하여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예비적으로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간접강제를 구함과 아울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부분(간접강제청구 포함)은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 2)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 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보도에 위법성도 없다.

3.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간접강제청구 포함)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간접강제청구 포함)와 관련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부분)

- 1)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당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는 후인 2018. 6. 7. 원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하여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공개검증 제안 및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보도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간접강제청구 포함) 부분은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제소기간 제한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등 여타의 절차를 통하여 정정보도 등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불성립결정 이후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위 제소기간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원고는 언론중재법 제18조 제3항³⁶⁾에서 규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불성립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간접강제청구 포함)는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인 2018. 6. 7.로부터 3개월 내인 2018. 9. 3.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정절차가 2018. 10. 24.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18.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① 언론중재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에서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각각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구기간을 지켜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이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언론보도로 침해된 피해자의 명예 또는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아울러 언론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언론중재법은 제22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제26조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36) 제18조(조정신청)

③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 제1항(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본 청구기간의 예외로서 소 제기 간주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결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제기 기간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소 제기 간주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사건 처리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을 소송절차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이나 소송절차로 이송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③ 한편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권리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해당 언론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간접강제청구 포함)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다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이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적시사실의 특정

(1) 이 사건 제1주장 부분

갑 제1, 2, 6, 9, 19, 26호증,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D의 경우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의 알고리즘상 F 관련 검색어의 급상승 검색어 체류시간이 다른 검색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취지로 “D에서 유독 F 관련 검색어인 J만 급상승 검색어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F과 관련된 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급상승 검색어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 제1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E” 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가 2018. 5. 6. 저녁「C」프로그램에서 F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후인 같은 날 23:47:30 J가 D의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3위로 등장하였고, 2분 뒤인 23:49:30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으나 최초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른 지 12분 만인 23:59:30 급상승 검색어 순위 차트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위 「C」프로그램 방송일 앞뒤로 3일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상위 20위에 오른 검색어 1,792개의 평균 급상승 검색어 순위 차트 체류시간(45분)과 'J'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른 적이 있는 검색어 309개가 평균 1시간 39분 동안 급상승 검색어 순위 20위권을 유지한 것 등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유독 검색어 'J'만 왜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것일까”라고 언급하였으나, “원고가 F와 관련된 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급상승 검색어 결과를 조작하였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위와 같이 F 관련 검색어의 급상승 검색어 체류시간이 짧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실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는 주제를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급상승 검색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보도의 후반부에서는 D의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를 조작하는 행위 및 D 기사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사공장’의 조작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F 관련 검색어가 쉽게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사라지는 현상의 원인을 원고의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더욱이 원고가 설명하는 급상승 검색어를 추출하는 로직과 알고리즘에 따르면 기존에 검색량이 많은 'F'와 같은 특정 검색어의 경우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거나 그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바, 이 사건 보도의 말미에서 진행자 및 방송 출연자가 한 “D에 대한 의혹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결과적으로 F의 불법과 비리를 D에서 가려주고 숨겨주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발언은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급상승 검색어에 있어 원고가 기술적으로 검색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의 논평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제목을 “E”로 표시하여 원고가 F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매우 뚜렷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 다60908 판결 참조), 이 사건 보도의 제목인 “E” 역시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목 자체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일부인 F 관련 검색어의 급상승 검색어 체류시간이 다른 검색어와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조작한 주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화면에 “G”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의 제목 화면을 캡처하여 표시함으로써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조작한 주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F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피고의 방송프로그램인 「C」가 방송된 이후 인터넷에 급상승 검색어의 추이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D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⑥ 원고는, 이 사건 보도는 H 교수가 인터뷰에서 “조작했다. 갑자기 없었다.”라고 발언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주어가 생략된 위 발언을 보충하기 위하여 영상에 “(A가) 조작했다. 갑자기 없었다.”라는 자막을 표시하여 원고가 조작 내지 삭제의 주체라고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H 교수의 발언 자막에 위와 같이 ‘(A가)’를 추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한 H 교수의 발언은 “사람들이 ‘I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 조작한다 안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확실한 검색량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 ‘(A가) 조작했다, 갑자기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지 않으려면 그 서비스(D)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확실히 공개를 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로서,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람들의 원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상승 검색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지 “원고가 급상승 검색어를 조작했다.”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⑦ 원고는, 피고가 「C」프로그램 방송 초기부터 F에 관하여 비판적인 보도를

거듭해왔고, 피고는 기획보도의 일환으로 “원고가 F 관련 검색어의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C」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F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F 관련 검색어의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주장 부분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 제2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F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 L의 「K」프로그램 방영 직후 해당 프로그램의 리뷰 기사에서 댓글 공감수가 0 아니면 마이너스1로 나타난 문제를 소개하고, 위 문제가 댓글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A 측의 답변과 함께 네티즌들 사이에서 댓글 공감수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보여주면서, D가 건전하고 공정한 여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도의 위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F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 「K」프로그램의 리뷰 기사에서 댓글 공감수가 0 아니면 마이너스1로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F에 관한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였다.” 또는 “L ‘K’ 프로그램이 F을 다룰 때만 댓글 오류가 난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부분 보도에서는 원고의 댓글 공감수에 대한 조작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의혹’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조작의혹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댓글 공감수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단순히 그 주장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부분 보도에서 “공감 수가 0 아니면 마이너스1로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A에게 문의한 결과 댓글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이 부분 보도의 말미에 방송 출연자가 “하필 왜 ‘K’에서 F을 다룰 때에만”이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 부분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상 이는 위와 같은 원고의 해명에 대해 방송 출연자가 의견 내지 논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방송 출연자들이 “원고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F에 관한 기사의 댓글 공감수에 대한 원고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넘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3주장 부분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 제3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는 보도의 말미에 방송 출연자가 “여론 왜곡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D에서 서비스하는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업체(이하 ‘매크로 조작 업체’라 한다)의 대표들이 처벌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피고가 취제한 구체적인 매크로 조작 업체들의 실제 검색어 조작 사례, 조작 방법 등을 설명한 점, ② 그 후 이 사건 보도의 말미에서 방송 출연자는 “A의 검색시장 점유율은 74%입니다. 막대한 영향력으로 사실상 여론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A가 영향력에 걸 맞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일 뿐이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70% 넘는 사람들이 D를 통해서 뉴스를 접합니다. 그래서 A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렇게 자신의 떨어진 신뢰를 위해서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A는 점점 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더욱이 피고는 ‘방치’라는 단어에 앞에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 부분 보도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 중 “여론 왜곡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피고가 위와 같은 검색어 조작이 여론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시장의 점유율 74%를 차지하는 원고가 매크로 조작 업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책이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논평 내지 주관적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매크로 조작 업체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이 사건 제1주장 부분

갑 제1, 2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F 관련 검색어인 'J'가 D의 급상승 검색어에 체류한 시간은 12분으로서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던 다른 검색어와 비교할 때 매우 짧은 편에 속하고, 같은 시간대의 또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M의 검색어 순위와 비교해도 그러한 점, ② 이는 D가 급상승 검색어를 추출하는 로직과 알고리즘이 M에서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F 관련된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되게 “F 관련 방송에만 ‘순삭(순식간에 삭제)’, ‘광탈(광속탈락)’ 현상이 일어나는지”, “유독 검색어 ‘J’만 왜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것일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표현이 오로지 F와 관련된 검색어에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검색어의 경우 ‘순삭’이나 ‘광탈’과 같은 현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에서 유독 F 관련 검색어인 J만 급상승 검색어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이 사건 보도에서의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주장 부분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F와 관련된 내용의 2018. 5. 26.자 L 「K」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D에 업로드된 위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 기사의 댓글 공감수가 0 아니면 마이너스1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 점, ②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D 이용자가 위 「K」 프로그램과 관련된 D의 리뷰 기사에 공감 버튼과 추천 버튼을 누르고도 숫자가 바뀌지 않거나 0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겪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한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보도 이전에도 D 뉴스 서비스의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 「K」프로그램의 리뷰 기사에서 댓글 공감수가 0 아니면 마이너스1로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이 사건 보도의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제공하는 급상승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 기사 댓글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도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의 이용자라면 경험할 수 있는 급상승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피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가 수집한 한정된 자료를 기초로 급상승 검색어 결과 추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피고는 피고가 검증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도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청구와는 달리 이 사건 보도가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정보도(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한 행위가 언론중재법 제30조의 위법행위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간접강제청구 포함)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언론중재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예비적 청구(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가합117603 판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을 보도했더라도 불기소결정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한 추후보도는 필요하다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간장게장에 중국산 꽃게를 끼워넣고 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았으며 냉동 가자미를 자연산 도다리로 속여 팔아 원고의 전(前) 직원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원고의 일부 혐의(국내산 꽃게와 중국산 꽃게를 섞어서 제조한 간장게장의 원산지를 '꽃게(국내산, 태안)'이라고 거짓 표시하였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해 추후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안의 성격상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신빙성 높은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으며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과는 별개로, 불기소로 종결된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추후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요지]

- ① 피고 D는 원고 A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G 등으로부터 녹취록, 원고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국산 꽃게 사진 등을 제공받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에는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해당 자료들은 내부자로부터 제공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법한 점, ③ 피고 D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약 열흘 전부터 원고 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H를 통하여 판매한 간장게장의 품질 문제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20. 4. 28. 이전인 2020. 2.경부터 SNS 및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 불거진 상태였고, 이 사건 기사는 간장게장 뿐 아니라 원고들이 판매한 다른 밀키트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상 신속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매체의 특성상 신속성이 요구되는 인터넷뉴스로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태안산 간장게장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꽃게를 일부 혼합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는데, 이후 검찰은 중국산 꽃게가 아닌 태안산 꽃게로 제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불기소로 종결된 사실을 추후 보도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117603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기)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	론	2022. 3. 3.
판	결	2022. 4.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3 일 이내에 E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산업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기사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안에 표시하여 48 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 본문이 통상의 기사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추후보도 대상기사(별지 3)의 본문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추후보도 대상 기사를 검색할 때 추후보도문이 함께 보이도록 하라.
 - 나.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3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 C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추후보도를 구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음식점업 및 외식업, 식품제조 및 유통,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TV, 라디오방송업 등과 더불어 E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 나. 피고 회사는 2020. 4. 28. 『F』라는 제목으로 피고 D가 작성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E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 다.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2020. 10. 22. 원고들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즉 2019. 11. 14.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고발인 G로 하여금 중국산 꽃게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고, 2019. 12.부터 2020. 1.까지 국내산 꽃게와 중국산 꽃게를 섞어서 제조한 간장게장의 원산지를 '꽃게(국내산, 태안)'이라고 거짓 표시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추후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이 간장게장에 중국산 꽃게를 끼워 넣었다고 허위로 보도하였다.
-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이 영광에서 건조만 한 중국 부세를 ‘영광 법성포 굴비’라고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보도하였다.
-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이 냉동 가자미를 자연산 도다리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보도하였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출판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간장게장에 중국산 꽃게를 끼워넣어 판매하였다는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 원고들이 태안산 간장게장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꽃게를 일부 혼합해 발송하였고, ㉡ 간장게장을 대량 주문한 S업체에는 중국산 꽃게로만 제조한 간장게장을 태안산으로 둔갑시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모두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부분에서 언급한 간장게장은 원고들이 H37)을 통하여 판매한 간장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찰은 원고들이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H을 통하여 판매한 간장게장에 대하여 태안산 꽃게로 제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

37)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업체 중 하나다.

3) 중국 부세 및 냉동 가자미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 원고들이 영광에서 건조만 한 중국 부세를 ‘영광 법성포 굴비’라고 속여 팔았고, ㉡ ‘냉동 가자미’를 ‘자연산 도다리’라고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모두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원고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다투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들이 태안산 간장게장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꽃게를 일부 혼합해 발송하였다’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고들이 태안산 간장게장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꽃게를 일부 혼합해 발송하였다’는 부분은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황 등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D는 원고 A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G 등으로부터 녹취록, 원고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국산 꽃게 사진 등을 제공받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에는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해당 자료들은 내부자로부터 제공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법한 점, ③ 피고 D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약 열흘 전부터 원고 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H를 통하여 판매한 간장게장의 품질 문제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20. 4. 28. 이전인 2020. 2.경부터 SNS 및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 불거진 상태였고, 이 사건 기사는 간장게장 뿐 아니라 원고들이 판매한 다른 밀키트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상 신속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매체의 특성상 신속성이 요구되는 인터넷뉴스로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시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태안산 간장게장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꽃게를 일부 혼합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는데, 이후 검찰은 중국산 꽃게가 아닌 태안산 꽃게로 제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불기소로 종결된 사실을 추후 보도할 의무가 있다.
- 다.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추후보도문은 위 불기소결정과 관계없는 중국산 부세 및 냉동가자미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추후보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되, 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 비율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가합4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2014883 판결

항소심에 이르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다고 해도 단일한 보도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신약 및 기능성식품 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언론사는 미국에서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상품의 효능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미국 법원이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에는 문제된 원고의 제품이 의약품이고 원고 회사가 수출 과정에서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의 지연만 초래하는 부적법한 것으로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단일한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청구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판결요지]

-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이고(제2조 제15호),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의 내용이다(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언론보도 자체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단일한 기사의 내용으로서 다수의 사실적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들은 그 기사의 보도로써 동시에 공표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언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그 언론보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청구변경 전후 정정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단일한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서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변경으로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0가합490 정정보도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3. 19.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C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24시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C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2020. 2. 25.자 D 기자 작성의 'E'이라는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72시간 동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상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최초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C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2020. 2. 25.자 D 기자 작성의 'E'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식약개발 및 제조판매업,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터넷신문 'C'(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같은 이름의 정기간행물(이하 '이 사건 주간지'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20. 2. 19. 및 같은 달 25.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이 사건 인터넷신문 및 이 사건 주간지에 각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① F연구소가 북부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이라는 부분, ② 원고가 자체개발한 물질인 G가 의약품 물질이라는 부분, ③ H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G 제품을 의약품이 아닌 손수건, 책, 주방기구 등에 해당하는 HS코드를 기재하여 밀수출했을 여지가 충분하며, 이것은 관세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부분, ④ 한국 내 지적재산권은 H사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 ⑤ 이 사건은 미국 FTC(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중이라는 부분, ⑥ 원고가 구체적인 자료공개를 거부하였다는 부분, ⑦ I의 J은 캐나다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는 부분, ⑧ 식약처가 현재 해외직구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기사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및 그 내용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①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F연구소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지향상 제품을 위한 연구, 개발, 안전한 식물 생산 등을 촉진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문적’이라는 표현은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라기보다 일종의 평가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갑 제18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F연구소가 소개하고 있는 기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관이 의약품에 관한 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②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 ‘G’가 의약품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그 규제의 내용 및 정도, 해당 물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그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피고가 「E」 또는 「E」이라는 제목 아래 ‘의약품 물질인 G’ 라는 단정적이 표현을 써가며 보도한 부분은, 설령, 전체적으로는 위 G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논조로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③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5, 42, 4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보도 내용의 근거가 된 해당 수출분에 대하여 원고가 모두 적합한 HS코드를 기재하여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보도 내용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④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한국 내 지적재산권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주식회사 K 또는 원고와 H 사이에 있었던 등록무효 사건에서 원고가 모두 승소한 사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두뇌 또는 인지 기능 증진용 조성물, 뇌신경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특허가 소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에서 H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언급된 이른바 ‘BF-7’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7, 17, 18, 2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BF-7’은 피브로인 추출물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H가 개발한 후,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로 인정받은 고유 상품에 붙여진 명칭으로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H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⑤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미국 FTC의 조사는 2018. 8.경 모두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출한 물질을 원료로 하여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FTC 조사가 시작된 이후, 그 판매업체의 법률대리인이 ‘FTC가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아무런 강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전송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조사 종결에 따른 처분 내용이나 조사 종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위 갑 제25호증으로 제출된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 및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게재하여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는데, 설령, 이 부분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6) ⑥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취재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성실히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오히려 피고의 취재요청을 ‘청부취재’라고 단정하며, 적대적인 태도로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I의 J이 현재도 캐나다 시장에서 판매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캐나다 정부에 J 제품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며, J 제품은 현재 캐나다의 L 사이트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도 이 부분 기재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해외직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식약처는 과대광고 부분만 단속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제품인 'G' 자체의 생산·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13, 14, 17, 18, 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식약처로부터 이른바 '피브로인 효소가수분해물'이라는 원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던 사실, 이후 위 인정의 근거가 된 논문이 관련 학회에서 철회되었고, 이에 식약처는 위 인정처분을 취소한 후, 국내에서 위 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미국으로 물질을 수출하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철회가 된 논문 결과를 인용하거나, 우리나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영업을 한 사실, 미국에서는 원고가 수출한 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이 기능성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이 취소된 기능성 물질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된 행위이고, 일반 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시키는 것 또한 식약처의 제재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든 사정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간접강제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A이 개발한 G가 의약품이라는 부분, A이 G 제품을 의약품이 아닌

손수건, 책, 주방기구 등의 HS코드를 기재하여 밀수출했을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각 보도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바(대법원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부분의 내용과 분량,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별지 3, 4 기재 정정보도문을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아울러 피고가 위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1나2014883 정정보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가합49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C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 4-1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고,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 2)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C에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은 별지 4-2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2-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별지 4-1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24시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상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 2)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C에 별지 2-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2020. 2. 25.자 D 기자 작성의 'E'이라는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별지 2-1, 2-2 기재 각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72시간 동안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별지 4-1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상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최초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C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2020. 2. 25.자 D 기자 작성의 'F'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다. 피고가 위 나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약개발 및 제조판매업,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터넷신문 'C'(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같은 이름의 정기간행물(이하 '이 사건 주간지'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2. 19.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별지 4-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20. 2. 25. 이 사건 주간지에 별지 4-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 하였다[위 두 기사는 그 제목을 달리하는 것(이 사건 인터넷신문에서의 제목은 「F」이고, 이 사건 주간지에서의 제목은 「E」이다)을 제외하고는 소제목과 본문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 위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인해 피해를 입었다(이하 아래 표의 각 순번 해당 부분을 순번 표기 대로 '○ 부분'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2-1, 2-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아래 표의 ② 내지 ⑦ 부분과 그 외에 2개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2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삭제하는 대신 추가로 ①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순번	기사 내용	원고 주장
①	미국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J를 상대로 J이 판매하는 K의 기억력·집중력 향상의 효능이 그 설명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하였다.	미국 P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H 물질은 의약품이다.	원고가 수출하고 있는 H 물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 원료이다.
③	원고는 H 제품을 수출하면서 수출품목 코드인 HS코드란에 책, 손수건, 주방기구에 해당하는 품목코드를 기재하였다. 이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H 제품을 적법한 품목코드로 기재하여 적법하게 수출하였다.
④	H에 대한 한국 내 지식재산권은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가지고 있다.	I가 보유한 특허는 등록무효가 확정되었다.
⑤	H 제품의 효능 및 미국 내 수입 유통과 관련한 사건은 미국 FTC(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중이다.	H 제품과 관련한 미국 FTC에서의 조사는 이미 2018. 8.경 종결되었다.
⑥	현재 J의 K는 캐나다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J의 K은 Q 및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쇼핑몰에서 판매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⑦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는, J의 K이 현재 해외직구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다.	J의 K 해외직구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 부분만 단속하고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①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①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이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이 청구기초의 동일성 없이 소송절차의 지연만 초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이고(제2조 제15호),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의 내용이다(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이다(제26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이처럼 언론보도 자체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단일한 기사의 내용으로서 다수의 사실적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들은 그 기사의

보도로써 동시에 공표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언론보도가 있는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언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그 언론보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의 허위성에 관하여 열거하면서, ① 부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P가 J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 등을 통해 그 소송 경과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갑 제17호증)를 소장에 첨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설령 피고 주장의 제척 기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① 부분 정정보도 청구가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변경 전후 정정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단일한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서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변경으로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과 그 허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는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정정보도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 다8678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과 그 허위 여부

1) ①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문맥 및 표현을 종합하여 보면, ① 부분은 ‘미국에서 P가 J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H 제품의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H 제품을 판매하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 제17, 47호증, 을 제15,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P 소송은 제1심에서 2021. 8. 25. P의 청구가 기각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원이 ‘H 제품의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적시사실은 허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②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가 제조·수출하는 H 물질의 효능과 수출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주제로 다루면서 제목과 일부 소제목 및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H를 의약품으로 지칭하였다. 즉, 제목은 「F」 또는 「E」, 소제목에서 “한국 의약품에 시스템 불신 우려”, 본문에서 “자체 개발한 의약품 물질인 H”, “HS코드란에 의약품이 아닌 손수건, 책 등으로”라고 표현하였다.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본문에서 H를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한 표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품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률상 그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내용 및 정도, 해당 물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그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기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던 H가 일반식품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해외에 우회 수출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표현방법과 원고가 제조·수출하는 H 제품의 효능과 그 수출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 내용을 통해 'H 물질은 의약품이다'라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조·수출하는 H 물질이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3) ③ 부분에 관한 판단

③ 부분은 원고가 H 제품의 수출 당시 기재하는 HS코드란에 손수건, 책 등으로 기재되었다는 I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으나, 피고가 I로부터 전달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출품목이 책, 손수건, 주방기구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명시하면서 이를 엄연히 관세법 위반으로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을 통해 '원고가 H 제품을 실제 품목과 다른 HS코드를 기재하여 수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 제35, 42, 43, 45, 5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보도 내용의 근거가 된 해당 수출분에 대하여 원고가 모두 적합한 HS코드를 기재하여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적시사실은 허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④ 부분에 관한 판단

④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기사의 표현은 "한국 내 지식재산권을 가진 개발사 I는"이다.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H 제품 개발 근거가 된 관련 논문이 I가 개발한 기억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M'을 무단도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후 관련 학회에서의 위 논문 게재 철회가 확정되자, 식약처가 원고의 H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를 금지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I를 '원 개발사'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④ 부분을 통해 'I가 H 제품 개발과 관련된 이른바 'M'에 관한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 제7, 8,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I, 또는 I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L와 사이에 있었던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I가 보유하고 있던 두뇌 또는 인지 기능 증진용 조성물, 뇌신경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특허가 소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서 H 제품 개발 근거 자료가 되었던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I에게 국내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M'과 관련한 권리 일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을 제7, 17, 18, 22, 26, 29, 53,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위 'M'은 I가 개발한 후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은 고유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I는 이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관계회사도 위 'M'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특허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지식 재산권'이라는 표현은 I가 위 'M'의 개발자로서 그에 부수되는 권리 내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통칭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⑤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⑤ 부분은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H 제품과 관련한 미국 FTC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 제2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출한 물질을 원료로 하여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미국 FTC 조사가 시작된 이후, 그 판매업체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2018. 10. 9.경 판매업체 측에 'FTC가 조사 종결을 확인해주었고, FTC는 아무런 강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 종결에 따른 처분 내용이나 조사 종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기사 말미에 위 미국 법률대리인이 보낸 이 메일(갑 제25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⑥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⑥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기사의 표현은 "현재 J의 K은 캐나다 시장에서 퇴출됐다."이다. 이 부분 전후 보도에서 J의 K에 대한 논란이 일자 캐나다 보건 당국이 우려를 표시하고 수입조치 전반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약처도 해외직구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⑥ 부분을 통해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J의 K이 캐나다 시장에서 사실상 거의 유통·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제9, 24, 34, 35,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캐나다 정부에 K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며, K은 캐나다의 N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던 사실, 현재 캐나다의 N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사이트에서 K이 판매상품으로 검색되지 않거나, 캐나다에서 판매가 승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있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이 Q와 캐나다의 일부 건강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상품으로 검색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매상품으로서의 검색결과는 캐나다 보건 당국의 수입조치 검토 이전에 수입된 기존의 재고 상품에 대한 판매이거나 실제로는 판매중단임에도 그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⑥ 부분은 K이 캐나다 시장에서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⑦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⑦ 부분은, ‘식약처가 J의 K이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 제9호증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제품인 H 자체의 생산·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13, 14, 17, 18,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식약처로부터 이른바 ‘O’이라는 원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던 사실, 이후 위 인정의 근거가 된 논문이 관련 학회에서 철회되었고, 이에 식약처는 위 인정처분을 취소한 후, 국내에서 위 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미국으로 위 물질을 수출하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철회가 된 논문 결과를 인용하거나, 우리나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영업을 한 사실, 미국에서는 원고가 수출한 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이 기능성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인정이 취소된 기능성 물질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된 행위이고, 일반 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시키는 것 또한 식약처의 제재대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부분 보도 내용에 J의 K의 국내 유통에 식약처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앞서 든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 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앞서 본 것처럼 ①, ②, ③ 부분에 적시된 각 사실은 허위사실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각 보도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 허위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2)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이 사건 기사와 위 정정보도문의 관련성, 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한 문구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별지 1-1(인터넷 신문), 1-2(주간지)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
- 3) 한편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1340, 2020가합1357(병합), 2020가합1364(병합), 2020가합1371(병합) 판결³⁸⁾

부동산 시행사인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불법대출까지 알선했음에도 시세가 하락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시세가 하락한 것은 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레지던스)이었다면 정정보도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H 오피스텔의 분양과정에서 불법대출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직후에 J의 실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떨어졌다는 보도를 한 후 ‘불법대출을 알선했다면 매매를 부추겼던 오피스텔 값이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표현하였다.

부동산 시행업 및 개발업 등을 수행하는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해 자사의 J 오피스텔은 보도가 나오기 4년 전 분양을 시작하여 준공을 완료한 오피스텔로, 불법대출 알선에 관하여 취재한 H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불법대출을 알선하여 분양한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H와 관련한 불법대출 알선, J가 분양가보다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방송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외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도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인용하였는데, 피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주문하면서, 해당 채널에 게시된 보도영상 하단에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 영상이 표시되도록 명하였다.

[판결요지]

- [정정보도] 위 가의 1)항의 방송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유튜브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각 게재되어 있는 별지5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영상 본문 하단에, 별지5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가의 1)항의 영상이 표시되도록 한다.
- [반론보도] 위 나의 1)항의 방송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가의 2)항 기재 인터넷 뉴스서비스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각 게재되어 있는 별지5 목록 기재 각 영상 본문 하단에, 별지5 목록 기재 각 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나의

38)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된 사례

1)항의 영상이 표시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제2보도는 ‘H와 J는 분양가격보다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분양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국한된 것으로, 오피스텔인 H는 그에 해당하지 않고, J도 당초 분양가격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므로, H와 J가 분양가보다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H 및 J의 투자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를 분양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1340 정정·반론청구 2020가합1357(병합) 정정·반론청구 2020가합1364(병합) 정정·반론청구 2020가합1371(병합) 정정·반론청구		
원	고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피	고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는.

- 가. 1)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F’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위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활자체 및 활자크기 이상으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위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활자체 및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2) 위 가의 1)항의 방송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유튜브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각 게재되어 있는 별지5 목록 제2, 3항

- 기재 각 영상 본문 하단에, 별지5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가의 1)항의 영상이 표시 되도록 하며,
- 3) 위 가의 1)항의 방송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5 목록 제2항 기재 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후에는 이를 피고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 나. 1)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F' 프로그램 첫 머리에 위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활자체 및 활자크기 이상으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위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활자체 및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2) 위 나의 1)항의 방송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가의 2)항 기재 인터넷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각 게재되어 있는 별지5 목록 기재 각 영상 본문 하단에, 별지5 목록 기재 각 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나의 1)항의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며,
 - 3) 위 나의 1)항의 방송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5 목록 기재 각 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 크기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후에는 이를 피고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라.
2. 위 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5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최초로 방영되는 ‘F’ 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반론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3 기재 정정·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에서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위 가항 방송 직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유튜브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각 게재되어 있는 별지5 목록 기재 각 영상 본문 하단에 각 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 크기로 “이 기사에는 정정·반론 보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하고, 그 아래에 “정정·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가항의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이 재생되도록 게재하고,

다. 위 가항의 방송일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초기화면에 “정정·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5 목록 기재 각 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 크기로 별지3 기재 정정·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게재 이후에도 이를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하고,

라. 위 가항의 방송일에 피고가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별지3 기재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요청하라.

2. 피고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하는 날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의 “별지3 기재 정정·반론보도문”을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으로, “정정·반론 보도문”을 “반론보도문”으로 변경하고, 주위적 청구 나.항의 “이 기사에는 정정·반론보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를 “이 기사에는 반론보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주위적 청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은 부동산 시행업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G블록 소재 ‘H’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H’라 한다) 및 인천 서구 I 소재 ‘J’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J’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위 각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이다. 피고는 케이블 방송사로서, ‘F’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뉴스를 보도하고,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피고 홈페이지’라 한다) 및 유튜브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피고 채널’이라 한다) 등에 게재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20 7. 17. F에서, 『K[L①]』라는 제목으로 별지6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와 『M[L②]』이라는 제목으로 별지7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하고, 이 사건 제1보도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를 하고, 피고 홈페이지와 피고 채널에 위 각 보도 내용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 및 영상(별지5 목록 기재 각 영상 중 제1항 영상은 이 사건 제1보도에 관한 것이고, 제2항 영상은 이 사건 제2보도에 관한 것이며, 제3항 영상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합한 영상이다)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가지번호별로 특정할 경우에만 이를 부기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보도는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을 통하여 J의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시 또는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J는 이 사건 제2보도가 이루어지기 이미 4년 전인 2017.경 분양을 시작하여 2019. 11.경 준공을 완료한 오피스텔로, 피고 소속 기자가 불법대출 알선에 관하여 취재한 H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보도가 적시 또는 암시한 위 사실은 허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이를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보도를 통하여 H의 분양과정에서 불법대출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2보도는 이 사건 제1보도 직후에

보도된 점, ③ 이 사건 제2보도는 J의 실거래가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2,500만 원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바로 다음에 ‘불법대출을 알선해가면서 까지 매매를 부추겼던 오피스텔 값이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라는 표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보도는 ‘J는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분양되었다’는 사실을 적시 또는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다음으로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기자는 2020. 7. 15.경 H의 분양홍보관에서 H의 분양과정에 관하여 취재하였을 뿐, J의 분양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취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J는 이 사건 제2보도 당시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고, 입주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3) 그리고 이 사건 제2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시행하고, 분양을 대행한 J의 분양 과정에서 불법대출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2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위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간접강제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보도 및 게재를 구하는 별지3 기재 중 정정보도문의 내용, 이 사건 제2보도와 해당 정정보도문의 관련성, 이 사건 제2보도의 표현, 보도 및 게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별지1 정정보도문을 보도 및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크기, 보도 및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정하고,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3.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 1) 이 사건 제1보도는 ‘H의 분양과정에서 소득증빙 위조를 통한 불법대출 알선이 이루어졌고, H의 청약 당시 589세대 가운데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청약 미달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 소속 기자에게 소득증빙 위조를 권유한 직원은 분양 대행 하도급

업체가 일시 채용한 인력으로 자신의 대행수수료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H의 청약이 미달된 것은 원고들이 홍보에 지출되는 고액의 광고비를 아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분양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H의 분양과정에서 불법대출이 이루어졌고, H의 투자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를 분양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이 사건 제2보도는 'H와 J는 분양가격보다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분양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국한된 것으로, 오피스텔인 H는 그에 해당하지 않고, J도 당초 분양가격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므로, H와 J가 분양가보다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H 및 J의 투자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를 분양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3)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이 사건 제1보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보도를 통하여 'H의 분양과정에서 소득증빙 위조를 통한 불법대출 알선이 이루어졌고, H의 청약 당시 589세대 가운데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청약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반론보도청구는 위 보도와 연관성 있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원고들은 위 보도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없는 오피스텔을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분양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제1보도에 'C측 관계자는 홍보관 영업은 분양 대행을 하는 하도급사에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C측은 당시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라는 설명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보도에 원고들의 반론이 충분히 보도 및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위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2) 이 사건 제2보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보도를 통하여 'H와 J가 분양가격보다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반론보도 청구는 위 보도와 연관성 있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임을 인정 할 수 있다. 또 원고들은 위 보도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없는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2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다. 반론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간접강제

법원은 반론보도의 내용 및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원고들이 보도 및 게재를 구하는 별지3 기재 중 반론보도문의 내용, 이 사건 각 보도와 해당 반론보도문의 관련성, 이 사건 각 보도의 표현, 보도 및 게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별지2 반론보도문을 보도 및 게재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활자 크기와 보도 및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정하고,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단체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이 특정 종교의 포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피고 언론사는 해당 단체의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는 내용,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 등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 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장 포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포교 등 종교적 색채를 가진 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이미 원고 측 반론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포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는 부분은 의견표명이어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을 개진한 것이므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도 말미에 이미 원고 측 반론이 포함되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는 해당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가장하여 포교하는 '위장 포교'를 하고 있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H종교단체가 과거에도 비영리 단체의 문화활동을 통하여 신도들을 포섭한 사례가 있고, 해당 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H종교단체 신도라면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진위의 입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진위의 입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이미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을 기사 말미에 『해당 단체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종교와 상관없이 비영리민간단체는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단체의 목적사업에 위반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라고 게재함으로써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21가합1583 반론보도심판청구		
원	고	비영리민간단체 C		
피	고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의 익일부터 5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 <문화>면 및 F <주요뉴스>면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³⁹⁾의 제목을 각 게재하고, 제목을 선택(클릭)하면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반론보도문은 최초 48시간 동안 E <문화>면 및 F <주요뉴스>면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며, 그 이후에는 E와 F의 각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 2 기재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하라.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의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9) 원고는 2022. 6. 21. 참고서면 및 첨부 별지를 제출하며 보도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 및 발굴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는 방송업(인터넷방송), 신문, 인터넷 뉴스콘텐츠 생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E와 F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0. 8. 『G』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E와 F 홈페이지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위장포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설립 이후 포교 등 종교적 색채를 가진 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별지1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기사 중 직접적인 포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포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어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원고의 반론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 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서울 관악구에 기반을 둔 한 청소년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비롯해 이사들과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H종교단체 신도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다음, 이에 대한 이단 전문가들의 의견, 즉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진 않더라도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간접적인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해당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가장하여 포교하는 ‘위장 포교’를 하고 있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H종교단체가 과거에도 비영리 단체의 문화활동을 통하여 신도들을 포섭한 사례가 있고, 해당 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H종교단체 신도라면 해당 단체가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하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즉 원고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않고, 포교 등 종교적 색채를 가진 활동을 영위한 적도 없다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의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이미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을 기사 말미에 『해당 단체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종교와 상관없이 비영리민간단체는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단체의 목적사업에 위반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라고 게재함으로써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합338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2002788 판결

원고가 ‘자사 인턴’을 고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소 당시 자사 인턴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추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고소를 취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채용연계형 인턴 운용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딸을 채용하였다. 이와 관련, 다른 인턴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을 익명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였고 원고는 게시자를 고소하였다. 피고 언론사는 원고의 인턴 채용 관련 일련의 과정에 대해 원고가 ‘자사 인턴’을 고소했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고소 당시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한 자가 자사 인턴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자사 인턴을 고소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쟁점사실인 ‘원고가 형사사건 상대방이 자사의 인턴임을 알면서 고소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보도의 내용은 지엽말단적인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이 사건 보도의 제목,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인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상대방이 자사 인턴임을 알면서 형사 고소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이 인턴 절차와 관계있는 취업준비생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 보도시점 이전에 게시자가 동료 인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확인한 후에도 형사 고소를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1심)

- 기사에 ‘원고가 자사의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위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정하지 않은 채용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던 언론사가 정작 해당 언론사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자를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로 보일 뿐 언론사가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자를 고소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령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사실의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그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반론보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항소심)

- 이 사건 각 보도에 '원고가 자사의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도의 제목과 내용을 비롯한 그 전체적인 문맥과 그것이 일반 시청자들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이 사건 쟁점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원고의 형사 고소 이후 당초 성명불상자가 동료 인턴으로 특정된 과정을 압축하여 원고가 자사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방송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형사 고소한 위 동료 인턴이 원고의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동료 인턴을 처음부터 고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형사 고소의 대상이 원고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임을 알고 고소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하였는지는 이 사건 각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반론보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문

사	건	2021가합33831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판결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D>, <E> 프로그램 방송 서두에서 진행자가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예비적으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되 배경화면으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표시하고, 주식회사 B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보도문 방송 영상이 검색되도록 요청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예비적으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 가. F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첫 화면 기사목록 최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해 통상의 크기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보도대상 인터넷기사(인터넷주소 2 생략) 각 본문 상단에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표시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C와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전송하고, 보도대상 인터넷 기사 각 본문 상단에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요청하라.
3. 피고 주식회사 B이 제1항의 의무를, 피고 주식회사 C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각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하는 일간신문사업자인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인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이하 'C'라 한다) 피고 B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와 피고 B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아 인터넷 뉴스를 게재하는 "F"(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21. 7. 21.경 신문기자 등의 채용을 위한 'G그룹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하였고, 약 두 달간의 인턴과정 및 면접을 거쳐 신문기자 등을 채용하였는데, 위 채용연계형 인턴과정을 거쳐 원고의 신문기자로 채용된 자들 중 원고 사장의 자녀(이하 '임원 자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 다. 원고의 위 채용연계형 인턴과정에 참여하였던 한 인턴(이하 '동료 인턴'이라 한다)은 2020. 11. 16.부터 2020. 11. 17.까지 언론사 취업준비생과 현직 기자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A 사장 딸은 끼워넣어서 신문기자에 합격시켰던데요.", "자기 능력은 아닙니다.", "아빠랑 본거죠" 등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 라. 원고는 동료 인턴이 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전송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동료 인턴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였다.
- 마. 이후 피고 B은 2021. 3. 8. 저녁시간대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D>에서 "[단독] H"라는 제목의 [별지3] 기재 기사를, 다음날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E>에서 "I"라는 제목의 [별지4] 기재 기사를 각 방송하였고, 피고 C는, 위 기사들 방송 당일에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사들을 게재하였다(이하 위 기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자신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를 대상으로 그가 자신의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자임을 알고도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으나, 원고는 애초부터 동료 인턴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동료 인턴의 신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소속 직원이었던 자에게까지 형사 절차에 착수한 범인이라는 인식을 주었으므로, ‘단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성명불상자를 고소할 의도였고 실제 그러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보충적인 반론을 게재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들은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기사에 ‘원고가 임원 자녀의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기사에 ‘원고가 자사의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위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정하지 않은 채용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던 언론사가 정작 해당 언론사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자를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로 보일 뿐 언론사가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자를 고소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전제의 원고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정·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3항), 피해자가 정정·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정정·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사실의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보도된 주요 사실관계는 ‘원고가 채용연계형 인턴과정을 거쳐 신문 기자 등을 채용하면서 임원 자녀를 신문기자로 채용하였고, 동료 인턴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의 비판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자 원고가 해당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삼은 자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비롯한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언론사가 형사 고소로 대응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원고가 고소의 대상이 원고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임을 알고 고소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하였는지는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취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이 형사 고소한 위 동료 인턴이 원고의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그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반론보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22나2002788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 고, 항 소 인	주식회사 B
피 고, 피 항 소 인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합3383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판결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E>, <F> 프로그램 방송서두에서 진행자가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예비적으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되 배경화면으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표시하고, 주식회사 C과 계약 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보도문 방송 영상이 검색되도록 요청하라.
3.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예비적으로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 가. G 뉴스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첫 화면 기사목록 최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해 통상의 크기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보도대상 인터넷기사(인터넷주소 2 생략) 각 본문 상단에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표시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D와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전송하고, 보도대상 인터넷 기사 각

본문 상단에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요청하라.

4. 피고 주식회사 C이 제2항의 의무를, 피고 주식회사 D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각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 및 ‘F’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유무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운영 등을 하는 법인으로 인터넷 뉴스를 게재하는 “G 뉴스”(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20. 7. 21.경 신문기자 등의 채용을 위한 ‘H그룹 채용연계형 인턴(DNA 인턴)’을 모집하였고, 약 두 달간의 인턴과정 및 면접을 거쳐 신문기자 등을 채용하였는데, 위 채용 연계형 인턴과정을 거쳐 원고의 신문기자로 채용된 사람들 중 원고의 대표이사 사장의 딸(이하 ‘임원 자녀’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다. 원고의 위 채용연계형 인턴과정에 참여하였던 다른 인턴(이하 ‘동료 인턴’이라 한다)은 2020. 11. 16.부터 2020. 11. 17.까지 언론사 취업준비생과 현직 기자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B 사장 딸은 끼워넣어서 신문기자에 합격시켰던데요.”, “자기 능력은 아닙니다.”, “아빠랑 본거죠” 등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비방글’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게시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 마. 피고 C은 2021. 3. 8.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E’에서 “I”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다음 날인 2021. 3. 9.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F’에서 “J”라는 제목의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각 방송하였다(이하 위 각 보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도’라고 한다). 피고 D는, 이 사건 각 보도가 방송된 당일 “G 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위 각 보도문을 게재하고, 이 사건 각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이 사건 각 보도”로 일괄하여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할 의무가 있다.”를 “할 의무가 있다(각 간접강제 포함).”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의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쟁점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보도에 ‘원고가 자사의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도의 제목은 “K”로 되어있고,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의 임원 자녀가 채용연계형 인턴과정을 통해 기자 직군에 최종합격하였는데, 동료 인턴이 그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가 해당 인턴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원고의 채용연계형 인턴 절차, 동료 인턴이 언론사 취업준비생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게시하게 된 경위, 동료 인턴의 인터뷰 및 이에 대한 원고 측의 반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보도의 제목과 내용을 비롯한 그 전체적인 문맥과 그것이 일반 시청자들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이

사건 쟁점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의 채용연계형 인턴 절차, 동료 인턴이 언론사 취업준비생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게시하게 된 경위, 동료 인턴의 입장에 관한 인터뷰 내용 및 이에 대한 원고 측의 반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보도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자사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보도에서는 원고가 당초 동료 인턴이 아닌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이 사건 비방글 작성·게시행위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비방글의 작성·게시자가 동료 인턴으로 특정되었음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료 인턴이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게시한 오픈채팅방은 ‘(전현직 기자와 함께하는) 언론고시 준비방’이고, 이 사건 비방글에 원고의 채용연계형 인턴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게시한 사람이 원고의 채용연계형 인턴 절차와 관계있는 취업준비생일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료 인턴은 2020. 11. 16. 및 2020. 11. 17. 양일간 오픈채팅방에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게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게시한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형사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도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1. 3. 8. 및 2021. 3. 9. 각 방송되었고, 그 사이에 위 피고소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그 신원이 동료 인턴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수사과정을 통해 위 피고소인 성명불상자가 동료 인턴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해당 인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형사 고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동료 인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던 이상,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의 형사 고소 이후 당초 성명불상자가 동료 인턴으로 특정된 과정을 압축하여 원고가 자사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방송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쟁점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3항),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서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보도에 이 사건 쟁점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해 적시된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원고가 채용연계형 인턴과정을 거쳐 신문기자 등을 채용하면서 임원 자녀를 신문기자로 채용하였고, 동료 인턴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의 비판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자 원고가 해당

동료 인턴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각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 사회 문제 공론화의 역할이 기대되는 언론사로서의 원고가 정작 자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문제삼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 고소로 대응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비방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게시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비방글을 게시한 사람이 동료 인턴임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더구나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형사 고소한 위 동료 인턴이 원고의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사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수사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동료 인턴을 처음부터 고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형사 고소의 대상이 원고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임을 알고 고소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하였는지는 이 사건 각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반론보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원고는 당초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합30767 판결

다큐드라마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나,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대화나 행동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재구성된 허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0년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복사건 당시 광부들 및 부녀자들로부터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이다. 과거 모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피해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고 원고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방송을 방영하였다.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양 당사자는 “사과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 프로그램을 원고의 입장을 담아 재제작하지 않은 한 자사 또는 타 방송사에서 방영되지 않도록 하며, 조정대상프로그램의 VOD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 언론사는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방송사를 흡수합병하여 조정합의 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

위 조정합의 이후 10여년이 지나 피고 언론사는 사복사건에 대한 라디오 다큐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원고는 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가 당한 심각한 피해를 축소하고 원고에 대한 가해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 원고를 도와준 것으로 묘사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과거 조정합의사항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잊혀질 권리, 반론권, 인격권, 음성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드라마는 실존인물의 성명을 그대로 쓰고 일부 당사자들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하였으며 사복사건의 사실관계 전달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창작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는 허구적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등장인물의 구체적 대화와 묘사된 행동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과거 조정합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피해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하였다.⁴⁰⁾

[판결요지]

-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사복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의 해설, 성우들의 연기가 결합되어 제작된 방송이다. 즉,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허구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전반적인 사건의 전개와 흐름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따르나(예컨대 사복사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다수의 관련자가 처벌받은 사실 등),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40) 2023년에 선고된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과 달리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사와 묘사된 행동은 대부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재구성된 허구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대사와 행동으로서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부분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사복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닐뿐더러, 제11, 12화 방송에서는 원고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무고한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물론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에게는 정당성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 폭도에 해당함을 반론보도해 달라는 취지는 사실관계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L가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방송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인바, 보도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까지 반론보도가 허용될 수는 없다.
- 원고의 잊혀질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복사건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언론·방송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가 사복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제작·방송한 것이 원고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가상의 인물인 'M 가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전체적인 줄거리를 전개하는 드라마적 요소를 기본적인 구성방식으로 하고 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발간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반드시 원고의 진술을 직접 듣는 방법으로 방송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반론권(또는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21가합30767 정정보도 청구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2. 9. 13.
판결선고		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되는 18:05 'C' 시간대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여 방송하고,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피고 홈페이지 특집프로그램(라디오) 화면의 본문 하단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게재하고,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안에 위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법적 지위

원고는 1980. 4. 21.부터 1980. 4. 24.까지 강원 D 사북영업소 일대에서 일어난 소요사태 (이하 '사북사건'이라 한다) 당시 광부들 및 부녀자들로부터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하였던 피해자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2015. 1. 2. F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는 강원도 G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다.

나. 사북사건 다큐멘터리 관련 조정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 1) F 주식회사는 2006. 12.경 .H.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사북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해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였고, 제작과정에서 원고 측의 입장을 전혀 취재하지 않아 원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방송을 방영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였고, 당시 원고와 F 주식회사는 “사과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프로그램을 원고의 입장을 담아 재제작하지 않은 한 자사 또는 타 방송사에서 방영되지 않도록 하며, 조정대상프로그램의 VOD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조정합의에 이르렀다.
- 3) 피고는 2015. 1. 2.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위 조정합의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 방송 경위

- 1) 피고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방영하기에 앞서 2020. 11. 6. '1980년 사북항쟁을 재조명한 라디오 드라마가 제작돼 방송된다.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I협회 지원을 받아 제작됐고, 배우 J 씨의 내레이션, 유명 성우들의 열연과 함께 사북항쟁 당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았다'는 취지의 뉴스보도를 하였다.
- 2) 피고는 2020. 11. 9.부터 2020. 12. 18.까지 평일 19:38부터 17분간 30회에 걸쳐 사북사건을 소재로 한 라디오 다큐드라마 <K>(이하 '이 사건 다큐드라마'라 한다)을 라디오로 방영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 6.경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게시하여 현재도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전체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3) 피고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의견청취 내지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원고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한 적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함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실존하였던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실존인물들의 성명을 그대로 쓰고, 일부 당사자들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하였으며, 내레이션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보충 설명하는 사복사건의 사실관계 전달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단순히 창작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방송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이다. 원고가 사복사건 당시 이웃집에서 발각되어 광업소 정문으로 이동하면서 갖은 폭행을 당하였고, 전봇대 기둥에 묶이거나 광업소 게시판에 결박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제11화는 이를 모두 생략하고 원고를 경비실 앞에 의자에 앉혀놓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제12화에서는 원고의 피해를 현저히 축소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가해자로서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L가 오히려 원고를 도와준 것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하였다(원고는 2022. 6. 15.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쟁점 부분을 별지 쟁점 부분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원인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사복사건 다큐멘터리 관련 조정합의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다큐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원고의 진술, 입장 등에 대하여 전혀 청취하지 않은 것에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 있고, 원고는 형사피해자로서 잊혀질 권리, 반론권(진술권), 인격권, 음성권에 직접 침해를 입었던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반론의 대상이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됨으로써 반론보도 청구권이 합헌적인 제도로 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원보도, 이하에서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보도를 '원보도'라 한다)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 2) 먼저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15호는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사북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의 해설, 성우들의 연기가 결합되어 제작된 방송이다. 즉,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허구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전반적인 사건의 전개와 흐름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따르나(예컨대 사북사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다수의 관련자가 처벌받은 사실 등),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대사와 묘사된 행동은 대부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재구성된 허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사건의 전개와 흐름의 기본토대가 되는 역사적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대사와 묘사된 행동은 창작된 부분이어서 허구이므로 이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대사와 행동으로서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부분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3) 한편,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바, 이는 ‘① 피해자 A에 대한 직접 취재나 의견 청취 없이 방송하였다’, ‘② 피해자 A는 당시 자신을 폭행한 사건 연루자들은 폭도가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피해자 A는 기둥에 묶여 광부와 부녀자들로부터 극심한 성적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하였다’, ‘④ 그 결과 피해자 A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에 빠지는 피해도 입었다’, ‘⑤ 방송에서 피해자 A를 도와주었다고 방영된 L는 피해자 A의 가재도구를 부수고 A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유죄형사판결을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도 가해행위를 시인하였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 4) 앞서 본 법리 및 '사실적 주장'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위 각 부분이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 ① 부분은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제작 방식 및 과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인바, 원고의 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제작·방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 ② 부분은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폭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폭도이다'라는 원고의 의견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인바, 사실관계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사복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닐뿐더러, 제11, 12화 방송에서는 원고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무고한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물론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에게는 정당성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 폭도에 해당함을 반론보도해 달라는 취지는 사실관계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④ 부분은 사복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1, 12화 방송에서 원고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방송되었으므로, 이를 청취한 청취자들은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통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정은 이미 보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보다 상세한 피해 정도를 반론보도해 달라는 것은 사실 관계에 관한 반박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부분은 원고를 도와주었다는 인물로 등장한 L는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보도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L가 원고에 대한 범죄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방송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인바, 보도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까지 반론보도가 허용될 수는 없다.
- 5) 결국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모두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반론보도가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인용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조정합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복사건 다큐멘터리 관련 조정합의는 조정대상프로그램인 「H」 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조정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정합의 성립 뒤에 피고가 새로 제작한 이 사건 다큐드라마까지

위 조정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합의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부정적 인상을 주는 등 원고의 반론권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방송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쟁점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고,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피고가 원고의 피해를 고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고 불만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② 원고의 잊혀질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북사건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언론·방송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가 사북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제작·방송한 것이 원고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이 사건 다큐드라마는 가상의 인물인 ‘M 가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전체적인 줄거리를 전개하는 드라마적 요소를 기본적인 구성방식으로 하고 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발간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반드시 원고의 진술을 직접 듣는 방법으로 방송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반론권(또는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다큐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성우가 등장인물들을 연기하도록 하였을 뿐, 원고의 음성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배우의 내레이션과 성우의 대사 연기가 교차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연기자인 성우의 음성을 원고의 음성으로 오해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 ⑤ 원고는 언론중재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아울러 주장한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은 ㉠ 주체가 언론 등일 것,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위법행위가 있을 것, ㉣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을 것, ㉤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 반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각 요건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3장

기사삭제청구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512049 판결

조정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합의의 주체였던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에도 미친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변호사인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불리한 내용의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보도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반론보도 게재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 언론사는 조정대상기사 외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별도로 게재하였고, 원고는 조정대상기사와 추가 영상 모두에 대하여 기사삭제 및 4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정 당시 피고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는 이후 해당 업무를 다른 법인으로 승계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승계한 법인에도 미치므로,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한편,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상에 대한 삭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조정 당시 해당 영상이 게시될 것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제소합의와 무관하다고 보아 본안판단을 거쳤으나 허위사실이라거나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피고 D는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무 등을 피고 E로부터 승계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조정사항에 명시된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조정사항 중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그 문구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읽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삭제 청구,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위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및 위 각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 청구, 위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제1동영상에 관한 삭제와 위 동영상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제1동영상이 G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 유포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하여 조정사항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동영상에 관한 삭제 청구와 위 동영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부분은 위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
- 이 사건 제1동영상,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2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기사나 각 동영상의 삭제, 삭제 요청,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설령 이와 달리 허위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여부를 앞둔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의혹 제기를 감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바, 이와 관련한 공익적 필요와 원고의 사익 침해 등을 비교·형량해 볼 때 위 기사나 각 동영상의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21가합512049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변	론	2021. 12. 15.
판	결	2022. 1.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F 뉴스 기사’ 중 순번 1번 기사의 삭제 청구, [별지3]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중 각 순번 ①번 기사의 삭제 요청 청구 및 위 각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 청구, 위 각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F NEWS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별지1] 각 기사를 삭제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G의 F NEWS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의 [별지2] 각 동영상을 삭제하고,
 -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3]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별지3]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2. 만일 제1항의 기간 이내에,
 - 가. 피고 주식회사 D이 제1의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C가 제1의 나.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다. 피고 주식회사 C가 제1의 다.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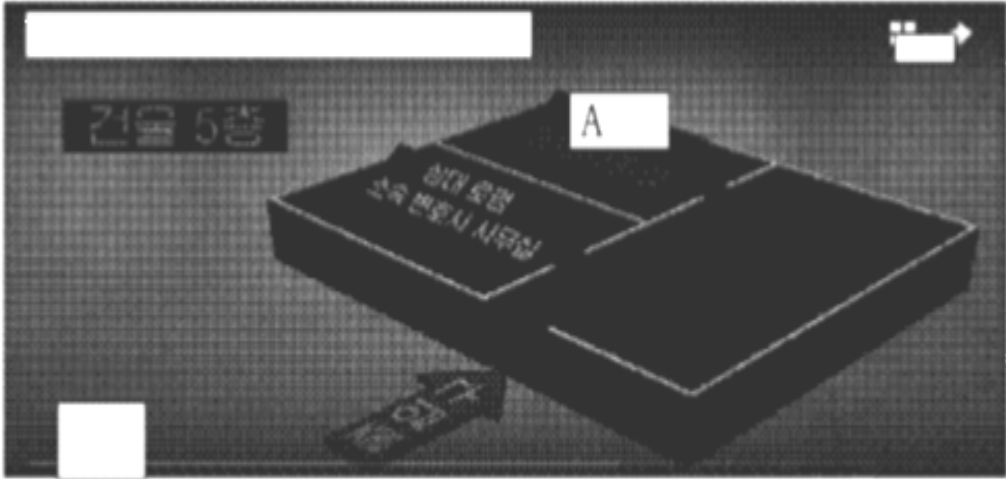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1990년경부터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 3.경 퇴직한 이래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2019. 3. 20. H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0.

20. 퇴임하였다. 원고는 법무법인 I을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던 2017. 10.경 위 법무법인이 소재하는 건물 5층으로 사무실을 옮겼고(사무실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18. 6. 18.경 위 법무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H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였다.



-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는 방송, 통신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G의 F 뉴스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을 관리하고, 뉴스공급계약에 따라 J 등 [별지3]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에 뉴스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피고 B는 피고 C 소속의 기자이다.
-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은 F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2019. 12.경 위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이전받아 현재 위 홈페이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1기사의 보도

- 1) 원고를 H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있던 2019. 1.경 피고 C 보도정보시스템에 과거 원고의 의뢰인이었던 사람의 제보(그 내용은 원고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위 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가 상대방 로펌에 입사하였다는 것이다)가 접수되었다. 피고 B는 이에 관해 취재한 후, 『K』라는 제목의 [별지1] 순번 1번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다만, 기사 하단의 <반론보도> 이하 부분은 추후 작성된 부분이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를 2019. 3. 17. ‘F 8시 뉴스’에서 보도하였다.

- 2) 이 사건 제1기사는 같은 날 F 뉴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되었고, J, L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에게 공급되어 위 각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위 방송 영상은 피고 C가 관리하는 G F 뉴스 채널에 게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동영상’)

다. 이 사건 제2기사의 보도

- 1) 피고 B는 『M』라는 제목의 [별지1] 순번 2번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를 2019. 3. 18. ‘F 8시 뉴스’에서 보도하였다.
- 2) 이 사건 제2기사는 같은 날 F 뉴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되었고, J, L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에게 공급되어 위 각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위 방송 영상은 G F 뉴스 채널에 게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동영상’).

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성립 등

- 1) 원고는 2019. 3. 18. 피고 C, E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기사 및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2019. 4. 3.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별지4]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
- 2)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F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제1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기사 및 제1동영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 1) ‘원고가 수임하여 수행하던 소송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암시하였다.
- 2) ‘A 변호사는 이미 사건을 수임한 직후인 2017년 9월경 상대편 로펌이 있는 건물로 이전해 사무공간을 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분은 원고가 상대방 로펌의 구성원이 되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였다.
- 3) ‘A 변호사가 이직 전부터 상대편 로펌 구성원들과 회식을 갖거나 정례회의를 했고 상대 로펌에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 맡고 있던 소송들을 서둘러 끝내려 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다.

나.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2동영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 1) '지난해 6월 1일 의료 분쟁 민사소송에서 A변호사가 대리하던 원고가 패소했는데 불과 보름 정도 뒤인 6월 18일 A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던 상대 로펌으로 이직했습니다' 부분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하여 실제적 진실을 왜곡하였다.
- 2) '소송 계속 중 법무법인 I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부분은 실제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허위사실이다.
- 3) '원고가 상대방 로펌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상대방 로펌으로 이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암시하였다.
- 4) '원고가 진실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E는 F 뉴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각 기사를 게재하였으며(현재는 피고 D이 위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 2동영상이 피고 C가 관리하는 G F 뉴스 채널에 게시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 D은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G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제1, 2동영상을 삭제하는 한편으로,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제1, 2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게재 등을 이행할 경우 피고 C, E 및 각 소속 임직원에게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관련 사업 일체를 이전받은 지위에 있고, 피고 B는 피고 C 소속 기자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정과 관련하여 2021. 9. 7.자 준비서면을 통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의 효력(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부분은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사항에서 정한 대로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점, ② 피고 D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무 등을 피고 E으로부터 승계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조정사항에 명시된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해당되는 점, ③ 이 사건 조정사항 4.항의 ‘(…)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그 문구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읽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삭제 청구,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위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및 위 각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청구, 위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동영상에 관한 삭제와 위 동영상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제1동영상이 G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 유포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하여 조정사항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동영상에 관한 삭제 청구와 위 동 영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부분은 위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동영상,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2동영상의 삭제, 삭제요청, 손해배상 등)

가. 기사 또는 동영상 삭제 청구의 판단기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동영상 삭제 청구에 관하여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동영상에 관하여

- 1) ‘원고가 수입하여 수행하던 소송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다’라는 부분

[판단] 이 사건 제1동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상대방 로펌 변호사들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제보자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도록 설득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상대방 로펌과 사이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이 정리되는 대로 상대방 로펌에 입사하기로 예정된

상태였고, 실제로 강제조정확정일(2018. 6. 12.)로부터 불과 6일 만인 2018. 6. 18. 상대편 로펌으로 소속을 변경한 점, ② 원고가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 자신의 이직 예정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위 의뢰인이 상당한 배신감을 느껴 원고에 대한 제보에 나아간 점[원고는 위 제보 관련 검색 화면(을 1호증)의 ‘일자’ 부분을 문제삼으며 위 제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일자’는 단지 검색 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2) ‘A 변호사는 이미 사건을 수임한 직후인 2017년 9월경 상대편 로펌이 있는 건물로 이전해 사무공간을 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분

[판단] ‘사무공간을 나눠 썼다’라는 부분은 원고가 사무실을 이전하였을 당시 사무실의 구조적 특성(가벽으로 방이 따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편 로펌 소속 변호사와 주된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이고,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허위 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3) ‘A 변호사가 이직 전부터 상대편 로펌 구성원들과 회식을 갖거나 정례회의를 했고 상대 로펌에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 맡고 있던 소송들을 서둘러 끝내려 했다’는 부분

[판단] 위 부분은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한 부분으로서, 그러한 내용의 사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어떠한 형식이었던 간에 상대편 로펌 구성원들과 식사를 하는 등 접촉을 하였던 것은 진실로 보이는 점(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상대편 로펌과 사이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이 정리되는 대로 상대편 로펌에 입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법무법인 I으로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시 진행하던 사건들을 서둘러 종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2동영상에 관하여

- 1) ‘지난해 6월 1일 의료 분쟁 민사소송에서 A변호사가 대리하던 원고가 패소했는데 불과 보름 정도 뒤인 6월 18일 A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던 상대 로펌으로 이직했습니다’ 부분

[판단] 위 부분은 원고가 맡았던 의료 분쟁 사건의 진행경과 및 원고의 이직 사실에 관한 적시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설명하였던 위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경과 등이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의 왜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위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소송 계속 중 법무법인 I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부분

[판단] 원고는 '영입'⁴¹⁾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원고가 향후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상대방 로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던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상대방 로펌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실제 이직하였던 이상(을 7호증 8, 9쪽 참조), 위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원고가 상대방 로펌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상대방 로펌으로 이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라는 부분

[판단] 이와 관련된 기사 및 영상 부분은 동료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내용으로서, 원고가 상대방 로펌으로의 이직을 위해 미리 위 로펌과 같은 빌딩의 같은 층 사무실로 이전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 스스로 밝힌 위 로펌 대표변호사 또는 직원과의 친밀한 관계, ② 이전한 사무실의 구조적 특성, ③ 원고는 이전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에서야 영입제안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언제 영입을 제안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원고가 진실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판단] 위 부분은 피고 B의 사건 취재 당시 원고가 했던 발언과 다른 내용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와의 통화 당시 상대방 로펌으로부터 영입에 관한 제안을 받았음을 스스로 말하였던 사실(을 제7호 증 8, 9쪽 참조)이 인정되므로, 위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동영상,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2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기사나 각 동영상의 삭제, 삭제 요청,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설령 이와 달리 허위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여부를 앞둔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의혹 제기를 감수하여야 할 지 위에 있는바, 이와 관련한 공익적 필요와 원고의 사익 침해 등을 비교·형량해 볼 때 위 기사나 각 동영상의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1) '영입'의 사전적 의미는 '환영하여 받아들임'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기사의 삭제 청구, [별지3]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이 사건 제1기사의 삭제 요청 청구 및 위 각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청구, 이 사건 제1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이미 알려진 공적 인물의 마약 전과라 하더라도 보도의 대상이 된 사안과 무관하다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위법한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사실관계]

전직 모 신문사 기자로 근무하였고 현재 인터넷 언론사 대표 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원고는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다수의 언론사는 이 게시글에 관해 보도하며 과거 원고의 마약 투약 전과사실을 함께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언론사들에 마약 전과사실 삭제와 함께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언론사들은 원고의 마약 전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다 원고 스스로도 공공연하게 밝힌 적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인 존재인 원고가 게시한 게시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 발언의 신빙성에 관한 참고자료로 언급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마약 전과사실이 각 보도에서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언론사별로 각 50만 원의 손해배상과 명예권에 기한 침해행위배제의 방법으로서 기사삭제를 인용하였다.

[판결요지]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부 언론을 통해 원고의 마약 전과 사실이 보도되었거나 원고 스스로 자신의 마약 전과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마약 전과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보도의 문맥이나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마약 전과 사실은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제목이나 본문에 적시되었다.
- 원고의 마약 전과는 위 게시물이나 N시장 보궐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고의 마약 전과를 보도한다고 해서 원고의 N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마약 전과는 2018. 9.경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도의 보도 시점에 원고의 마약 전과를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도에 앞서 원고 스스로 전과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약 범죄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 원고가 기자로서 공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마약 전과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6. G 7. H 주식회사 8. I
변	론	2022. 8. 24.
판	결	2022. 9. 28.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주식회사 B, D는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주식회사 B, E은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2022. 9.

-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라. 피고 주식회사 F, G은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마. 피고 H 주식회사, I은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J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각 기사 중 각 '삭제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라.
- 나.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F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F 인터넷 신문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사 중 '삭제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라.
- 나.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H 주식회사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H 인터넷 신문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제5항 기사 중 '삭제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라.
- 나.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 4항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피고 주식회사 B, D는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피고 주식회사 B, E은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피고 주식회사 F, G은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피고 H 주식회사, I은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K 소속 기자로 근무하다가 현재 'L'라는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자 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일간지 'M'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B 소속 기자이다.
- 3)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피고 F 소속 기자이다.
- 4)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I은 피고 H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의 N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페이스북 글 게재

원고는 2021. 4.경 페이스북에 N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O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청년들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P 찍은 건 후회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O 유세차량에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부가 투기세력을 못잡았다고 투기세력 차량에 오르면 어떡해. 이 영상에 등장한 바보 20대들아", "애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진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 Q정당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피고 C, D, E은 피고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 G은 피고 F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피고 I은 피고 H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아래 표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별지2 내지 6 기사를 게재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원고의 마약 전과 사실을 보도하였다(이하 위 기사를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도'라 하고, 위 보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순번	일자	작성자	제목 및 내용	별지
1	2021. 4. 3.	피고 C	『R』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체포된 후 해고된 전 일간지 기자가 최근 Q정당 O 후보지지 연설을 한 청년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비하 발언을 했다. A씨는 K 기자로 재직하던 2018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약속을 잡은 이를 기다리다 '마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에 대한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K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2
2	2021. 4. 4	피고 D	『S』 A씨는 K 기자로 재직하다 2018년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K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3
3	2021. 4. 4.	피고 E	『T』 A씨는 K 기자로 재직하던 2018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약속을 잡은 이를 기다리다 '마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에 대한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K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친여 성향 인터넷 매체를 운영 중이다.	4
4	2021. 4. 4.	피고 G	『U』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체포된 후 해고된 전 일간지 기자가 최근 O Q정당 N시장 후보지지 연설을 한 청년들을 향해 “애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려라.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이다. Q정당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한편 A씨는 K 기자로 재직 중이던 2018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당시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K은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5
5	2021. 4. 4.	피고 I	『V』 필로폰 실행 A K언론 전 기자 “W” SNS 막말 A씨는 K 기자로 재직 중이던 2018년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는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K은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후 약물중독자 권리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탐사행동기자'라고 밝히며 활동을 하고 있다.	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번호 있는 것은 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H, I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스스로 마약 전과를 공개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약 전과 사실 보도에 대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를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원고의 전과 사실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마약 관련 전과는 이미 대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공개적인 정보인 데다가 원고 스스로 공공연하게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부 언론을 통해 원고의 마약 전과 사실이 보도되었거나 원고 스스로 자신의 마약 전과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마약 전과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1) 기사 삭제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 사건 각 보도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원고의 마약 전과가 적시된 별지1 각 해당보도의 삭제할 부분이다. 나아가 위 각 삭제할 부분은 이 사건 각 보도의 전체 문맥이나 의미 구조상 필수적이라거나 나머지 기사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배제로서 이 사건 각 보도 중 위 각 삭제할 부분의 삭제를 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 C와 그 사용자인 피고 B가 공동하여, 이 사건 제2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 D와 그 사용자인 피고 B가 공동하여, 이 사건 제3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 E과 그 사용자인 피고 B가 공동하여, 이 사건 제4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 G과 그 사용자인 피고 F가 공동하여, 이 사건 제5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피고 I과 그 사용자인 피고 H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도의 경위, 형식과 내용, 피고들의 언론 매체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한 원고의 위자료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삭제할 부분'을, 피고 F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삭제할 부분'을, 피고 H는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삭제할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에게, 피고 B, C는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도 게재일인 2021. 4. 3.부터, 피고 B, 피고 D는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보도 게재일인 2021. 4. 4.부터, 피고 B, 피고 E는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3보도 게재일인 2021. 4. 4.부터, 피고 F, G은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4보도 게재일인 2021. 4. 4.부터, 피고 H, I은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5보도 게재일인 2021. 4. 4.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가 게재한 이 사건 게시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원고의 발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원고의 전과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므로 삭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다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보도의 문맥이나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마약 전과 사실은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제목이나 본문에 적시되었다.

(1)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나 Q정당 소속 국회의원 X의 비판 의견(이 사건 제3보도) 등을 보도하고 이어지는 문단에서 원고의 마약 전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이다.

(2) 이 사건 제1보도는 제목에서 “마약 해고된 前 기자”, 이 사건 제4보도는 제목에서 “마약 투약 前 일간지 기자”, 이 사건 제5보도는 제목에서 “필로폰 기자”, 부제목에서 “필로폰 실형 A K언론 전 기자”라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Y일자 치러질 N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원고가 O을 지지한 청년들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원고의 마약 전과는 위 게시물이나 N시장 보궐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고의 마약 전과를 보도한다고 해서 원고의 N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마약 전과는 2018. 9.경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도의 보도 시점에 원고의 마약 전과를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도에 앞서 원고 스스로 전과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약 범죄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라) 원고가 기자로서 공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마약 전과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4장

기타 참고사례

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223316 판결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주관적 평가일 뿐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C 언론사 기자로 재직 당시, 모 단체가 특정 회사 회장과 전무를 청탁금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해당 회사가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자 C 언론사 사회부장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분 뒤 이를 삭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C사를 퇴사했고 I 언론사에 기사 삭제 경위를 제보하였다. 제보를 받은 I 언론사는 원고의 제보내용을 기사화하였고 I의 대표이사는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C사가 기사삭제 대가로 광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C사 소속 타 부서 기자였던 피고는 해당 게시글에 보도내용을 일부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면서 원고를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본인들이 듣고 싶고 쓰고 싶은 대로 쓰신 것은 아니신지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인이 C사에 불만을 품고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며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댓글이 자신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피고가 이 사건 댓글을 단 I 대표이사의 게시글에는 원고가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관련 기사 링크되어 쉽게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관련 기사에는 원고가 작성한 특정일자 기사의 삭제 경위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했던 C 기자(현재 퇴사)’라는 기재 부분도

있으며, 원고의 제보 내용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표현들 중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 ‘본인들이 듣고 싶고’ 등은 그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아는 사람이나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 표현들의 대상이 원고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표현들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I 대표이사 게시글에 대한 피고의 생각이나 비판적 평가, 당시까지 피고가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관련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중 이 사건 표현들만 따로 떼어내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표현들 중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명백하나 이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표현이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표현들도 모두 피고가 이 사건 관련 기사 내용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 사건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피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 내지 비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21가단22331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판	결	선
결	선	고
		2022. 5. 13.
		2022. 6. 1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7. 2. 1.부터 2018. 5. 11.까지 경제종합일간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회부 사건팀 및 법조팀 소속 취재기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C의 금융부 소속 취재기자로 근무하였다.
- 나. C는 2018. 1. 30. 원고가 작성한 'D단체가 2018. 1. 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E F회사 회장과 G 전무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고, F회사는 위 기사가 C 홈페이지에 게시되자 즉시 C에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C의 사회부장 H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기사가 게시된 때로부터 약 20분 뒤 이를 삭제하였다(이하 '1. 30.자 기사'라 한다).
- 다. 원고는 C를 퇴사한 후인 2018. 5.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기자 J에게 위 1. 30.자 기사의 삭제 경위에 관하여 제보하였고, J은 2018. 5. 28. I 홈페이지에 'K'를 제목, 'L'을 소재목으로 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관련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라. 같은 날 I의 대표이사 M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스크가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김영란법으로 이 언론사를 처벌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이른바 언론사의 조직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돈을 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기사를 올리거나 내리는 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할 테니까요'라는 글을 게시하면서(이하 'M의 게시글'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기사를 링크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같은 날 M의 게시글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 바. 한편, F회사는 I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절차에서 F회사와 I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관련 기사에서 '3개'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사회부장은 기사를 내리는 대신 F회사에서 금전 대가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변경되었다.
- 사. 원고는 2021. 7. 1.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이 사건 댓글과 관련하여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2021. 8. 25. '피고가 1)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 2) 그 자리

당사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3) 듣고싶고 쓰고싶은대로'라는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1)부분은 그러한 기재만으로 원고를 특정하였다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2)부분은 피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 명예훼손적 표현이거나 어떠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우며, 위 3)부분에 관하여는 그 표현의 대상이 원고인지 M인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의 의견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우며, 피의사실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M의 게시글에 대한 반론으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제보가 확실치 않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I의 기자 J에게 1. 30.자 기사 삭제와 관련하여 제보한 내용은 원고가 직접 들은 내용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댓글에서 ①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 ② '그 자리 당사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3개 받았다"가 아니라 "세개 받았다"입니다', ③ '본인들이 듣고 싶고 쓰고 싶은 대로 쓰신 것'이라고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들'이라 한다)하여 마치 원고가 C에 불만을 품고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댓글에는 원고의 성명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만으로는 그 표현의 대상이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중 이 사건 표현들은 원고의 명예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관련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 등에 대한 피고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설령, 이 사건 표현들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피고로서는 관련 녹취록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얘기에 비추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댓글에는 원고 이름이나 원고를 곧바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댓글을 단 M의 게시글에는 원고가 N에게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관련 기사가 링크되어 쉽게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관련 기사에는 원고가 작성한 1. 30.자 기사의 삭제 경위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했던 C 기자(현재 퇴사)'라는 기재 부분도 있으며, 원고의 제보 내용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표현들 중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 '본인들이 듣고싶고' 등은 그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아는 사람이나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 표현들의 대상이 원고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표현들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 사실 적시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 756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이 사건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의미, 맥락, 표현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관련 기사가 게재한 직후에 M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서 그것에 링크되어 있는 이 사건 관련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제보만 있는 상황에서 1. 30.자 기사 삭제 경위와 관련하여 금전수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방적인 입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생각이나 비판적 평가, 당시까지 피고가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관련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중 이 사건 표현들만 따로 떼어내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표현들 중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명백하나 이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표현이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표현들도 모두 피고가 이 사건 관련 기사 내용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 사건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피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 내지 비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표현들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그렇다면, 이 사건 표현들이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가합33524 판결

항소가 취하된 사건의 판결확정일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된 시점이지만, 1심 판결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산일은 항소가 취하된 시점이다

[사실관계]

정정보도청구소송의 1심에서 법원은 반론보도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이후 취하하였다. 당시 피고였던 언론사는 항소가 취하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자 9일 후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다.

판결문의 주문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항소가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경우 판결확정일은 항소취하일이 아니라 기존 1심 판결의 항소기간이 도과된 날이 된다.

이 사건에서 항소기간이 도과된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면 약 1,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 원고는 판결에 기하여 해당 금액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언론사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고, 언론사는 이행강제금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며 항소가 취하된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판결 확정 시점은 항소기간이 도과된 날인 2022. 1. 1.로 볼 수밖에 없으나, 이 날을 간접강제 및 그 집행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기 전까지 원고는 반론보도를 게재해야 할지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 취하일을 이행강제금 부과 기산일로 삼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간접강제금의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항소기간이 만료한 날로 의울할 수밖에 없다.
- 판결 확정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나, 간접강제 및 그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현실 및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판결확정 시점'을 집행의 허부에 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였다. 그렇다면 항소심 계속 중인 동안에는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하여야 할 확정적인 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산일을 형식적으로 따진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 여지가 없어진 날로 보아야 한다.

판결문

사	건	2022가합33524 청구이의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2022. 9. 2.
판	결	2022. 10. 1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가합3787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2카정50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6.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871 정정보도 청구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피고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일반사회면에 별지 2-2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을 별지 3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고, 최초 24시간 동안은 일반사회면 첫 페이지에 게재하되,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반론보도문을 대상기사와 함께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2. 만약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는 2021. 12. 26.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021. 12. 20. 항소하였으나,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22. 1. 20. 각하명령이 이루어졌다.
- 다. 한편, 피고는 2021. 12. 30.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2022. 2. 7.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2. 2. 14.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정보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재5401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각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12. '원고의 이 사건 각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3,076,400원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시기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2022. 2. 14.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2022. 2. 14.로부터 9일이 경과한 날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반론보도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100만 원이다[1일 50만원 × 2일(9일-7일)].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871 정정보도 청구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초과한 청구금액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시기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2022. 1. 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 카572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 및 간접강제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의율되는 2022. 1. 1.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반론보도문 게재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산·집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정의에 반하고,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2022. 2. 14.부터 원고에게 반론보도문 게재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과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산·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회 현실에 부합된다.

가)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나)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22. 1. 20. 각하명령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2021. 12. 30.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2. 2. 14.

항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항소기간이 만료한 2022. 1. 1.로 의율할 수밖에 없다.

판결 확정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나, 간접강제 및 그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현실 및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판결확정 시점'을 집행의 허부에 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였다. 그렇다면 항소심 계속 중인 동안에는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하여야 할 확정적인 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라)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며 항소를 하였던바, 원고로서는 피고의 항소가 취하되기 전까지는 '반론보도'를 하여야 할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과 달리 피고가 항소를 취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로서는 항소장 각하명령이 이루어진 시점에 '반론보도'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다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원고에게 현저히 부당하다.

마)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및 간접강제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산일을 형식적으로 따진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항소를 취함으로써 원고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어진 2022. 2. 14.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2022. 2. 23.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반론보도를 하였던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871 정정보도청구등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000원[1일 500,000원 × 2일(9일(피고의 항소 취하일인 2022. 2. 14.부터 원고가 반론보도를 한 날인 2022. 2. 23.까지) - 7일(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반론보도를 하도록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정144 판결⁴²⁾

추측만으로 소송 결과를 정반대로 보도했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기자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국에서 해당 회사의 특정 상품의 효능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임상실험이 데이터 조작과 위조, 날조로 철회되어 미국 법원이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하였다는 내용을 종합시사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보도하였다.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소송에서 해당 회사는 승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소 제기 사실만을 확인하고 판결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이 사건 기사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J와 F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J의 F에 대한 위 민사소송을 기각하는 내용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선고하였을 뿐이다.
- 피고인은 기자로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지역신문을 통하여 J의 위와 같은 소제기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 사건 기사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정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이 사건 기사 중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 부분이 지엽말단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언론기사나 출판물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은 오랜 경력의 기자로서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의 공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2) 이 보고서에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83 판결과 동일 보도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문

사	건	2022고정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종합시사주간지 (주)B⁴³ 취재 1팀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주)D(건강식품 연구개발·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이 국내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증받지 못한 식품을 밀수출하여 해외로 유통시키고 다시 그 식품을 국내로 역수입하여 유통시킨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제보내용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취재과정에서 ① 피해자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사무실을 둔 유통회사 E를 통하여 미국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F(이하, ‘F’이라 함)에 G(실크단백질을 효소로 가수분해한 펩타이드 혼합물로 식품원료)를 납품한 사실, ② F이 위 G를 원료로 하여 H(건강보조식품) 보조제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 ③ 2018. 6. 21.자 미국 I 지역신문에 “... J(이하, ‘J’라 함)는 2018. 6. 11.⁴⁴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43) “(주)C”의 오기로 보인다.

44)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7. 6. 11.”은 “2018. 6.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the Eastern District of Missouri)에 F를 상대로 J는 F의 H 보조제 30일 분량을 구매해 복용하였으나, 복용 중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략)... 원고는, 피고가 아홉 번 중 두 번의 임상실험이 데이터 조작 및 위조, 날조로 철회되었다는 것을 제품 포장, 병, 안내책자로 공개했다면 H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송에서 진술하고 있다. ...(중략)... J는 F에게 배심재판, 징벌적 손해배상, 보조제가 임상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광고의 중단, 변호사 수입료와 비용 그리고 법원이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구제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 ① 피해자 회사가 F에 건강보조식품 원료인 G를 납품하고 있는 사실, ② F은 G를 원료로 하여 H 보조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 ③ J가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F를 상대로, F이 판매한 H 제품 효능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H의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효능 등에 대한 광고 중단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직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고, 만약 F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위 제품의 일부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로서, 그 일부 효능 뿐만 아니라 위 제품 전체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제품의 미국 수출을 비롯한 국내외 판매실적의 급격한 추락은 물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9. 14: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B 홈페이지에 “[단독] L’라는 제목하에 미국 미주리주I에 사는 J는 2017년 6월45) 건강식품제조기업 F의 H(30일치)를 구입해 복용하였으나 설명과 달리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 동부지방법원에 제품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J는 일부 임상시험이 데이터조작과 위조, 날조로 철회됐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사 게재 당시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J와 F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21. 8. 25. J의 F에 대한 위 민사소송을 기각하는 내용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선고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5)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7. 6. 11.”은 “2017년 6월”의 오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5. 위 사무실에서 종합시사주간지인 M에 '[단독] N'이라는 제목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무렵 위 기사가 실린 M이 시중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기사 게재 당시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J와 F사이의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21. 8. 25. J의 F에 대한 위 민사소송을 기각하는 내용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선고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인제출자료 중 인터넷기사(증거기록 5권 830면), 잡지기사(증거기록 5권 834면)
1. 결정문 등본 중 수사보고(J 미국 소송제기 관련 판결유무)(증거기록 4권 81면)수사 보고 (미국연방지방법원 판결 첨부)
1. 고소인 제출자료 중 각 이메일(증거기록 5권 898면),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내용 요약), 고소인 진술서등
1. 고소대리인 추가제출자료 중 J대 F사(증거기록 3권 795면), D회사 O 연구 관련 조사보고서 (증거기록 3권 951면), 각 특허/실용신안 인쇄미리보기(증거기록 3권 1034면, 1141면), 각 논문(증거기록 3권 1138면), 각 원료별정보(증거기록 3권 1231면)
1. 고소인제출자료 중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증거기록 5권 824면),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증거기록 5권 827면), 주식회사 P의 법인등기부(증거기록 5권 840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있어 피고인은 2020. 2. 19. B 홈페이지에 판시 기사를 게재하고, 2020. 2. 25. 종합 시사주간지인 M에 판시 기사를 게재한 점, 각 기사의 제목은 “[단독]N” 내지 “L”이고 각 기사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점(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비록 이 사건 기사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은 근거가 된) 논문이 관련 학회에서 철회된 후 피해자 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 인정처분을 취소받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미국으로 위 원료를 밀수출하고 미국에서 그 원료로 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기사는 인정이 취소된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의 첫부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 미주리주 I에 사는 J는 2017년 6월⁴⁶⁾ 건강식품제조기업 F의 H(30일치)를 구입해 복용하였으나 설명과 달리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 동부지방법원에 제품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J는 일부 임상시험이 데이터조작과 위조, 날조로 철회됐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기사 게재 당시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J와 F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부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21. 8. 25. J의 F에 대한 위 민사소송을 기각하는 내용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선고하였을 뿐인 점(아울러 이 사건 기사 중 밀수출 부분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적합한 HS코드를 기재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자로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2018. 6. 21.자 미국 I 지역신문을 통하여 J의 위와 같은 소제기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미국 미주리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위와 같은 기사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7권 1,620면 등), 이 사건 기사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공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⁴⁷⁾⁴⁸⁾, 피고인은 단정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이 사건 기사 중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

46) 2018. 6. 21.자 미국 I 지역신문에는 소제기일이 “6. 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6. 11.이다.

47) O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이 법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벤처다 보니 투자회사에서 여러 가지 투자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회사에서 저희에 대한 웹 검색은 당연히 해보고, 저희 회사만 검색하면 뉴스 기사에서는 B 기사가 제일 위에 뜹니다. 그러한 기사를 보고, 기사 내용만 보면 저희 회사가 온갖 타 회사 제품을 도용하고 밀수하고, 이런 범죄기업처럼 기재해 놓았는데 어느 투자회사가 저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산된 투자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48) 경쟁업체인 P가 ‘Q’이라는 원료를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이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는 ‘Q’이라는 원료 개발에 관여한 사람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동종의 ‘G’이라는 원료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P와 피해자 회사는 수년에 걸쳐 법적 분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이 지엽말단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언론기사나 출판물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은 오랜 경력의 기자로서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의 공표 이후에도 오래 동안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상으로 삼아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측이 뒤늦게 정정보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4-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특정 기업의 권위적 문화를 비판하면서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도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특정 스타트업 업체 대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서 인터넷 등에 소개되자, 해당 스타트업의 권위적인 음주문화 등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원심 법원은 이 글 가운데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인 스타트업 대표가 실제로는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해당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회적 관심사로서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라도 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쉼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하였다’는 것으로,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지병이 있어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선정되어 인터넷 등에 소개된 회사 대표가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사풍을 조성하는지는 사회적인 관심에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스타트업 기업의 바람직한 사내 문화 등은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이 포함된 전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지 1년 가량 지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거기에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20도15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상	고	인
원	심	종
판	결	선
결	선	고
원	심	종
판	결	선
결	선	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471 판결
2022. 4.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 나. 같은 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쉼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만취한 직원들에게 과음을 강권한 사실이 없었고, 직원들을 림살룸에 데리고 가 여직원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과 동석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 4. 19.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림살룸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원심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룸살롱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가라오케 주점에서의 회식 자리에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음에도 여성 접대부를 동석케 한 사실이 있는 등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 등을 인터뷰한 영상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명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될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 설립되어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총 9명의 직원과 2명의 인턴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이른바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피해자는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고성을 내거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화를 낸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일부 여직원이 사내에서 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14. 피고인에게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직원들은 이번 재계약에서 연봉을 삭감할 예정이니, 미리 직원들에게 공지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직원들이 종종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곤 하였는데, 술자리의 모습에 관하여 일부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제1실에서 ‘술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제작한 인터뷰 동영상에 나온 유명인을 흉내 내고 유사하지 않으면 별주를 마시는 게임을 하거나, 참석자들이 술잔을 채우고 차례대로 이를 마시는 일명 파도타기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제1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껴려보는 등으로 눈치를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음주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꼈다’, ‘과음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직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직원 공소의 1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소의 2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거부하기 어려운 술자리 문화’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저녁회식에 참석해 내키지 않는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8. 4.경 기자들이 작성한 인터넷 콘텐츠(그 무렵 책으로도 발간되었다)에서 피해자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인재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된 것을 보고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은 이 사건 게시글 외에도 당시 대형항공사 오너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이 부당한 처사가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벌어지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도 대기업에 비하여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하여 파급력이 작다는 자조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행위를 위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기업 오너 일가의 행위에 투영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종교나 신념, 성장 배경과 가족 관계 등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음주에 대한 선호도나 거부감의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고, 직장의 규모, 업무의 내용과 방식, 구성원 간의 친소 관계와 조직 내 위계질서를 포함한 직장 문화 등 근로 환경에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와 관련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상사의 공식적·명시적 업무 지시가 아니더라도, 회식 참석과 같은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사의 태도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지와 그 정도 역시 근로자의 성격, 경력, 회사 내 지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를 단지 근로자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 특히 회사의 대표(운영자)와 근로자가 직접적,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방식을 감안하면 회식 참석자들이 스스로 음주 여부,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지위,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술자리에서 보인 피해자의 행동과 그로 인해 직원들이 느낀 압박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지병이 있어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비록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자들에 의하여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선정되어 인터넷 등에 소개된 회사 대표가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사풍을 조성하는지는 사회적인 관심에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상고이유서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직원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피해자가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이 부당한 사내 문화가 존재함을 알려 근로 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바람직한 사내 문화 등은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이 포함된 전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지 1년 가량 지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거기에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의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의 사실’,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혼 경위나 사유,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피해자가 마을 제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 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혼한 사람이 해당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해당 행사에 이혼한 피해자와 그 남편이 참석한 것에 대해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이혼사실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거나 ‘왜 행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부분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단순히 이혼사실 자체만을 언급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

-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도 변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해당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서 이혼한 피해자가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사 참석을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이혼한 피해자가 왜 행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는데, 발언 배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행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

사	건	2020도15642 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종	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5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9.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오후 부산 일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산 ○○구 △△동 주민자치위원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던 중, 이혼한 사람 등이 ◇◇제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공소외 1에게 “어제 열린 △△동 ◇◇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공소외 2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저녁 무렵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제3대 위원장을 역임한 공소의 3 등 △△동 주민 7~8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지던 중 “공소의 2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의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이 ◇◇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구 △△동장이고, 피해자는 이혼한 사람으로 △△동 □□통 통장이다. ‘◇◇제’는 부산 ○○구 △△동에서 매년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로서 예전에는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 등이 참석할 경우 부정을 탄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누구나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동 주민자치위원 공소의 1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의 1이 △△동 밖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던 중 “△△동 ◇◇제에 참석한 주민이 ‘△△동에 살지도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 등이 참석한다’고 하면서 그런 소문이 저에게 들리더라. 공소의 1 위원님이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해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공소의 1에게 공소사실 요지 가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저녁 무렵 △△동 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장인 공소의 3과 공소의 1 등 △△동 주민 7~8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지면서 ◇◇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공소사실 요지 나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 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요지 가, 나항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제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도 변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제에 참여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서 이혼한 피해자가 ◇◇제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 참석을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이혼한 피해자가 왜 ◇◇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는데, 발언 배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참석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첫사랑’ 등으로 불리던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것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국민첫사랑’ 등으로 불리던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남자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게재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표현을 포함한 모든 표현에 대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

-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에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7도19229 모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종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101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유지와 원심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 전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3)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5)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6)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결정 참조).

나. 1) 원심 판단 중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그러나 원심의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
 - 나) 2015. 3.경 피해자가 남자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와 그 남자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다.
 -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 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그렇다면 피고인은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 4)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 5)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까지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와 결론

원심판결 중 2015. 10. 29. 모욕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2015. 12. 3.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